

제391회국회  
(정기회)

## 법제사법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9월24일(금)

장 소 법제사법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1.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4332)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7778)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77)
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9)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33)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7)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15)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1)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76)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67)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15)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5)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45)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39)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2)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8)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20)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77)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99)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7)
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15)
2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86)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4)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13)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8)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68)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8)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34)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2)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9)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6)
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80)
3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5)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2)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00)
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49)
4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87)
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86)
4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05)
4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83)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46)
45.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10737)
4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0)
4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9)
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98)
4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14)
5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5)
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50)
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93)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4)
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4)
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53)
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71)
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54)
5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3)
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30)
60.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6)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96)
6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21)
6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2)
6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30)
6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2)
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65)
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15)
6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27)
6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22)
7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680)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45)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310)
7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458)
7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80)

75.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95)
7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87)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497)
7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823)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8)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91)
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993)
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932)
8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553)
8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73)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22)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191)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43)
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59)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47)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77)
9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800)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66)
9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016)
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0758)
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621)
96.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52)
9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
9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39)
10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3871)
10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
1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562)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362)
1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14)
1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754)

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47)
1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80)
1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705)
1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707)
12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476)
1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045)
1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98)
1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
1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295)
13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17)
1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669)
1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170)
1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590)
13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562)
1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213)
1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268)
1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804)
14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2)
1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3)
14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1)
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상정된 안건

1.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2) ... 8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78) ..... 8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8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 ..... 8
5. 감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 ..... 10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3) ..... 10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 10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 10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1) ... 10

|                                                                                                                    |    |
|--------------------------------------------------------------------------------------------------------------------|----|
|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6) …                                                        | 10 |
|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1) …                                                        | 10 |
|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7) …                                                        | 10 |
|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15) …                                                                        | 10 |
|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5) …                                                                        | 10 |
|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5) …                                                                        | 10 |
|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9) …                                                                     | 10 |
|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2) …                                                                     | 10 |
|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8) …                                                                     | 10 |
|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0) …                                                                     | 10 |
|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7) …                                                                     | 10 |
|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9) …                                                                     | 10 |
|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7) …                                                                     | 10 |
| 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5) …                                                                     | 10 |
| 2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6) …                                                                     | 10 |
|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4) …                                                                        | 10 |
|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3) …                                                                        | 10 |
|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8) …                                                                       | 10 |
|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8) …                                                                        | 10 |
|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                                                                | 10 |
|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4) …                                                                     | 10 |
|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                                                                     | 10 |
|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2) …                                                                     | 10 |
|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                                                                     | 10 |
|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6) …                                                                     | 10 |
| 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0) …                                                                     | 10 |
| 3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5) …                                                                     | 11 |
|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                                                      | 11 |
|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 …                                                                    | 11 |
| 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9) …                                                                    | 11 |
| 4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7) …                                                                    | 11 |
| 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6) …                                                                    | 11 |
| 4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5) …                                                                    | 11 |
| 4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3) …                                                       | 11 |
|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                                                    | 11 |
| 45.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7) … | 11 |
| 4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0) …                     | 11 |
| 4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9) …                 | 11 |
| 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8) …                                                   | 11 |
| 4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 …                                                                     | 11 |
| 5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5) …                                                                      | 11 |

|                                                                               |    |
|-------------------------------------------------------------------------------|----|
| 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0) .....                            | 11 |
| 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3) .....                            | 11 |
|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214) .....                                   | 11 |
| 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4) .....                             | 11 |
| 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3) .....                             | 11 |
| 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1) .....                             | 11 |
| 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4) .....                           | 11 |
| 5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3) .....                            | 11 |
| 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0) .....                 | 11 |
| 60.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6) .....                             | 11 |
|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6) .....                    | 11 |
| 6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1) .....                | 11 |
| 6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2) .....                | 11 |
| 6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 .....                   | 11 |
| 6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2) .....                   | 11 |
| 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5) .....             | 11 |
| 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5) .....                            | 11 |
| 6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7) .....                            | 11 |
| 6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2) .....                              | 11 |
| 7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0) .....                              | 11 |
|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5) .....                              | 11 |
|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0) .....                              | 11 |
| 7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8) .....                              | 11 |
| 7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0) .....                              | 11 |
|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5) .....                              | 11 |
| 7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7) .....              | 11 |
|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7) .....                        | 12 |
| 7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3) .....                        | 12 |
|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8) .....                        | 12 |
|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1) .....                       | 12 |
| 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3) ..... | 12 |
| 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2) .....                               | 12 |
| 8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3) .....            | 12 |
| 8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3) .....            | 12 |
|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2) .....              | 12 |
|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1) .....              | 12 |
|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3) .....              | 12 |
| 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9) .....              | 12 |
|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               | 12 |
|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               | 12 |
| 9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               | 12 |
|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6) .....             | 12 |
| 9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6) .....                   | 12 |

|                                                                            |    |
|----------------------------------------------------------------------------|----|
| 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8) ...          | 12 |
| 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              | 12 |
| 96.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2) .....              | 12 |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 53 |
| 10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9) .....                       | 53 |
| 10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                                  | 53 |
| 1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 55 |
| 1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                          | 65 |
| 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 ...             | 65 |
| 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          | 65 |
| 1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 65 |
| 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                                | 65 |
| 1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 .....                          | 66 |
| 1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 .....              | 66 |
| 1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 .....                          | 66 |
| 12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 ...              | 66 |
| 1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 .....   | 66 |
| 1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 .....                      | 66 |
| 1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66 |
| 1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66 |
| 1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66 |
| 1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 .....                     | 66 |
| 13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 .....                   | 66 |
| 1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66 |
| 13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66 |
| 1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                   | 70 |
| 1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 ...          | 70 |
| 1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 ..... | 70 |
| 13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2) .....     | 70 |
| 1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 70 |
| 1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 ...          | 70 |
| 1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 .....                | 70 |
| 1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4) ...          | 70 |
| 14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                         | 70 |
| 1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                       | 70 |
| 1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                          | 70 |
| 14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                          | 70 |
| 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                     | 71 |
| 9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9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

|                                                               |    |
|---------------------------------------------------------------|----|
| 2103871) .....                                                | 72 |
| 10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0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0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2 |
|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 .....       | 73 |
|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3 |
| 1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 ..... | 73 |
| 1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 .....        | 73 |
| 1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 73 |
| 1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    | 78 |

(13시46분 개의)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국회(정기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심사 의결한 뒤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과 청원을 상정해서 심사한 다음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안전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이 없는 국회 실천을 위해서 오늘 상정하는 법률안과 주서본, 제안설명 그리고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좌석에 있는 노트북에 실었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고유법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332)
2.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07778)
3.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77)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조금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여기까지만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하시고……

○윤한홍 위원 그러세요.

○소위원장대리 김남국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김남국 위원입니다.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회의를 열어 법률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2건의 법률안은 형사소송 등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실현하려는 내용으로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형사사법업무처리기관에 제출한 전자문

서를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간주하여 기존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부여하는 등 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의 원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형사사법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의 접수, 유통, 송달, 통지, 보관 및 폐기의 원칙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전자문서의 형태로 영장 등을 제시하거나 전송하는 전자영장 집행의 특례, 형사재판에서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특례,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 검사가 전자문서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하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률안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형사사법절차에 대해서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 또는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제상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외국공무원 등에게 그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약속 또는 공여하거나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현행 5년에서 자연인과 같은 수준인 7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반부패협약 관련 OECD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석하신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시고자 하는 위원님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우선 1소위 심사 법률안을 의결하고 새로 상정하는 고유법에 대해 대체토론을 해서 1소위로 회부한 다음에 적절하게 현안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1소위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

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서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안의 제명 그리고 제1조(목적)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5조(전자문서에 의한 형사사법절차의 수행)부터 제8조(전자서명)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9조(전자문서의 접수)부터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3조(전자문서의 유통)부터 제16조(전자문서의 열람·복사 등)까지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17조(영장 등의 집행에 관한 특례)부터 제22조(벌칙)까지와 부칙에 대해 의견 갖고 계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했으므로 국회법 제58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제정법률안입니다. 따라서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제79조의2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서 위원회 의결로 오늘 의결하는 법안의 비용 추계서 제출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 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과 제2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제3항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로 회부된 고유법과 청원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9)

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3)

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7)

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15)

9.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1)

1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76)

1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1)

1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67)

1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111115)

14.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5)

1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645)

16.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39)

1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2)

18.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8)

1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20)

20.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77)

21.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99)

22.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7)

23.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5)

24.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86)

25.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4)

26.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13)

27. **민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8)

28.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68)

29.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8)

30.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34)

31.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74)

32.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2)

33.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조웅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9)

34.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6)

35.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0)

36.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5)
37.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2)
3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00)
3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49)
40.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87)
4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86)
42.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05)
43.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83)
44.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46)
45. 공군 20전투비행단 성폭력으로 인한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사건은폐, 무마, 회유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37)
46.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0)
47.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 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9)
48.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8)
49.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14)
50.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5)
51.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50)
52.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93)
5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214)
54.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4)
5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53)
5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571)
57.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54)
58. 보안관찰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3)
59.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30)
60. 집행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6)
61.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96)
6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21)
63.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2)
6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30)
65.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2)
6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5)
67.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15)
68.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27)
69.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22)
70.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680)
71.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45)
72.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규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310)
73.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458)
7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80)
75.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장제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95)
76.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87)

77.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497)
78.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823)
79.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병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8)
80.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91)
8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법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993)
82.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932)
8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553)
8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73)
8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22)
8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금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191)
8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43)
8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59)
8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47)
9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77)
9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800)
9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66)
9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016)
94.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0758)
9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111621)
96.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유상범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100052)

(13시55분)

○위원장 박광온 의사일정 제5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까지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먼저 소병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8항……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주시고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혹시 우리 고유법까지는 다 마치고 하시면 안 될까요?

○윤한홍 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런가요?

○윤한홍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 관련해서 유감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타위법 심사 관련해서 오늘 상정된 안전이라든지 참석자 명단을 보면 전부 차관으로 타위법 심사를 하러 오도록 통보가 돼 있는데, 어제 분명히 제가 간사와 협의를 법안의 경중에 따라서 중요한 법안이라든지 여러 기관에 연결될 수 있는 법안들은 장관이 와야 되고 경미한 내용일 경우에 차관이 오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어젯밤에 위원장님께서 차관들 참석토록 일방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고.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원내지도부 간에 구두로 이런 합의가 있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당 원내지도부 의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법안의 경중에 따라서 필요하면 장관, 필요하면 차관이 오도록 협의하는 게 맞다, 분명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차관들로 모두 참석토록 통보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유감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정원법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원장을 참석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타위법 심사 때 저희들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고.

지금 고유법 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어제 우리 당에서 대장동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장동 관련 사안은 전 국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사실은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시간을 다투는 사항이고. 왜냐하면 중

거인멸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민들의 관심이 많고 걱정이 큰 사항이라서.

어제 특검법이 발의가 됐는데 오늘 아마 의안과에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법사위를 진행하는 중이라도 이 특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서 심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의가 진행되는 중이라도 확인해서 우리 법사위로 회부된다면 바로 상정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8월 달에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간의 국회법 개정 관련된 합의 내용에 조금 이견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국회법 개정과 관련된 합의와 더불어 구두합의이지만 법사위에서 타위법 심사할 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있는데요.

지난 8월 23일 국회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님도 참석해 있는 자리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운영위원장이 발언을 합니다. ‘두 가지 사항의 신사협정이 있었다. 아마 언론보도를 통해서 모두들 들으셨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법사위의 경우에는 타위법 심사할 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얘기했었다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당시에 김기현 원내대표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구두합의 내용에 대해서 약간 이견은 있으신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우리 원내대표나 우리 원내수석에게 확인해 본 바로는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은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위원장님께서 오늘 타위법 심사 시에 차관을 출석하도록 하신 것은 그런 양당 간의 합의에 기초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존중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우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병철 의원님께서 의사일정 제38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희망하셨습니다.

소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병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존경하는 박광온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비상사태 등이 발생하여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체류기간이 도과할 수 있다는 실례와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순천을 비롯한 전남 등 대부분의 농촌지역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미등록 체류자들의 출국으로 심각한 일손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비상사태, 장기적인 항공기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때에는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 신속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른 법률안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 회의록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장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요약본은 4건의 보고사항입니다마는 시간관계상 2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본 2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상 강간과 추행

의 죄를 추가하고 수사처수사관과 직원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첫째, 고위공직자범죄에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추가하는 부분은 방조·은폐되기 쉬운 권력형 성범죄를 독립행정기관인 수사처에서 수사하도록 하여 엄정하게 처벌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합니다만 해당 범죄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가 포함하는 고위공직자의 주요 직무범죄 및 부패범죄와 그 보호법익이나 죄질이 다른 측면이 있음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수사처수사관과 행정직원을 증원하는 부분은 2021년 7월 14일 송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처의 규모가 검찰이나 경찰과 비교하여 크지 않고 접수사건이 출범 후 약 7개월간 2000건을 초과하여 수사처 인력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으나 아직 수사처 출범 초기이고 증원하려면 국가예산이 소요되는바 수사처의 인력운용 현황, 일인당 업무량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요약본 4페이지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제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법관의 제척사유에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지·경고·시정명령·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행한 때’를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은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제척사유 중 일부인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거범죄에 대하여 수사의뢰를 한 때에는 현행법상 제척사유인 법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직무를 행한 때와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법관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수사의뢰나 고발 등 일정한 직무를 행한 때를 법관의 제척사유에 명시적으로 추가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기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법에 규정된 제척사유는 법관이 사건 당사자 또는 그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사건에 대해 수사업무에 종사하거나 전심재판에 관여하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 한정되는데 개정안이 추가하려는

제척사유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게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선희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희** 의사일정 제23항부터 의사일정 제42항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924조의2에 따라 친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선거를 함에 있어 양육권에 한정하여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권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로서 미성년 후견인이 해당 친권을 행사하는 경우 양육권이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해당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의 규정만으로는 미성년 후견인이 그 부모를 상대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양육권에 한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양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결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비 확보를 용이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은 청구에 의해서만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혼 시의 양육책임을 참고하여 가정법원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양육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도록 추가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조웅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미국의 증거개시제도 등과 같이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제기 전 증거조사의 요건으로 본안과의 관련성, 신청인의 법률상 이익, 다툼 해결의 필요성 등을 규정하고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괴롭힐 목적 등과 같은 증거조사 기각사유와 국가기밀, 사생활보호 등 증거조사 개시 이후 증거조사 제한사유를 열거하면서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법원의 임의적 변호사선임명령, 증거유지명령 및 화해권고결정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의료소송 등에서 개인이 병원·국가기관·기업 등에 관련된 증거를 취득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증거의 구조적 편재성을 보완하고 본안소송 전 증거조사를 통하여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며 민사절차로도 실효적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여 민사사건의 형사화 현상을 차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제기 전 증거조사에 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요될 수 있고 광범위한 증거 탐색에 따른 사생활, 기업비밀 침해 등 제도 남용의 소지도 있으며 직접심리주의에 반하여 소송절차에서 사실심이 약화될 여지가 있으므로 찬반의견 등을 감안하여 소제기 전 증거조사제도의 도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검토사항은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와 노트북에 게재되어 있는 각각의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은 진선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병조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3항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65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그리고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검토한 내용 중 2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본 1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2항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원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가 2004년 신행정수

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판결에서 국회와 대통령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판결하면서 다만 사법권이 행사되는 장소는 수도를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고 특허법원의 경우에도 법률 개정을 통해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한 선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을 때 법률 개정으로 대법원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고등법원 사건이 전체 상고사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대법원을 대구광역시로 이전할 경우 사법서비스 제공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다음으로 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의사일정 제56항 김형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변호사, 법무법인 등이 아닌 자가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취급하는 업무 등을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변호사 아닌 자의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는 법률서비스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광고와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소위 사무장 변호사를 조장하여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의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최근 법률시장에 등장한 변호사 소개 플랫폼은 변호사를 회원으로 모집한 뒤 이들의 정보를 게재하고 일반 국민과 변호사를 연결해 주는 구조로 플랫폼 운영자는 변호사로부터 정보 게재에 따른 요금을 수취하는 등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 영업행위에 관하여 첫째, 변호사 스스로가 위 플랫폼을 광고매체로 삼아 자신의 업무에 대한 광고행위로 보는 견해와 두 번째로 변호사가 아닌 플랫폼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제시될 수 있는데 후자의 견해에 따를 경우에 플랫폼의 영업행위는 변호사 아닌 자의 광고행위로 볼 수가 있어 변호사 소개 플랫폼의 영업행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법률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박철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6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5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66항부터 제95항 법률안까지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은 생략하고 요약본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9항, 제71항, 제72항, 제73항, 제75항 전용기 의원, 권인숙 의원, 이규민 의원, 윤한홍 의원, 장제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균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하급자를 간음 또는 추행한 자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을 신설하려는 내용입니다.

군인 간 성범죄는 군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군 내 성범죄는 군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의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고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추행행위가 병사 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6항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국 및 세관절차 특례요청주체에 사법경찰관을 추가하고 불법수익 은닉 등의 신고대상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검경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고 조직화·지능화되고 있는 마약류범죄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가 가능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사법경찰관에 의한 입국 및 세관절차 특례 요청은 마약류범죄 수사에서 외국과의 불완전한 공조 이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국내에 입

국·상륙한 마약류중독자에 의한 범죄 발생과 국내로 반입된 마약류 망실로 인한 사고 시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3쪽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의사일정 제94항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격을 자문위원회에서 행정위원회로 전환하고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직권으로 가석방 적격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며 가석방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석방 대상자에게 부과할 준수사항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성격을 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은 동 위원회의 심사 의결이 전문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업무의 성격과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위원회가 행정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위원회의 심사 의결사항에 구속력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원회의 설치목적 등 관련 규정을 추가로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은 가석방 직권심사의 대상과 범위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노트북에 기재된 검토보고서 원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한 법률안과 청원에 대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체토론을 먼저 하고 현안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은 신청하신 위원님 위주로 실시하고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토론하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몇 항에 대해 토론하시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나요?

그러면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대체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5항까지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하고 의사일정 제96항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소추에 관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기관장님들께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행정처장님, 본 위원이 대법원에 자료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요청을 드립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머니투데이의 법조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재명 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의 상고 기간 중에 당시에 권순일 대법관실을 자주 방문했다는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사의 파기환송 판결에 권순일 대법관이 큰 결정적인 영향을 했다, 사실상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이러한 평가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오비이락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권순일 대법관이 퇴임하신 이후에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최근까지 근무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 야권에서는 이게 사후수뢰죄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당시 법조팀장으로서 권순일 전 대법관실에 출입했는지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실에서 질의를,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에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습니까? 외부인, 내부인이 출입할 때는 따로 대법관실에 출입기록을 쓰는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자료 요청을 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제

가 확인해서……

○위원장 박광온 행정처장님, 잠깐만요.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대법원의 출입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질의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권순일 전 대법관실에 출입한 법조기자 현황, 이것을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전주혜 위원 이상입니다.

○최강욱 위원 저도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예, 최강욱 위원님.

○최강욱 위원 법무부장관님, 처장님이나 누가 해당되실지 모르겠는데 보도에 보니까 남옥 변호사라는 분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화천대유, 무슨 4호 회사의 대표로 계셨다는데 과거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가지고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관련 판결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법무부장관님, 지난 6일에 우리 위원회 의결로 최근 5년간 수사정보정책관실 소속 검사·수사관·행정직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 검사 명단만 제출하고 수사관·행정직원 명단은 제출이 안 났습니다. 조속히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제가 자료 요구 조금 하겠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 대법관 시절에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할 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심·2심 판결문을 읽지 않고 연구보고서만 보고 판결을 했기 때문에 화천대유에 대한 부분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했거든요.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거든요. 연구보고서에 화천대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판이 이미 끝난 사항이고 하니까 이재명 지사 무죄 판결을 할 때 권순일 대법관이 보았다는 연구보고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과 법원행정처장님, 공수처장님께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긴급현안질의 때 자료제출 요청을 했는데 여러 개가 안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따가 다시 목록을 실무진한테 드리겠습니다. 챙겨서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유시민 씨 등 열세 분의 대상자에 대해서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고발장이 손 검사로부터 김웅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요. 실제 이게 제출된 고발장하고 일치되는지 여부를 언론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발장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강욱 위원님에 대해서 미통당이 20년 8월에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도 사본을 주시면 좋겠고요.

최근에 9월 13일 날 세계일보 보도에 의하면 윤석열 후보 장모에 대한 대응 문건이 사진까지 찍혀서 나왔어요.

PPT에 사진 있었는데, 좀 올려 봐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 그것은……

○소병철 위원 그 사진에 대해서도 나온 고발장이 아마 지금 언론에 다 뿌려져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수처에서 김웅 의원실 그리고 손준성 검사실 9월 10일 날 압수수색영장 한 것에 대해서 언론에 단편적으로 나오는데요. 혹시 그 사본이 제출될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대법원장님, 지난번에 판사 불법사찰로 그때 언론이 시끄러웠을 때 법원 내부에서 장모 판사님이랑 몇 분의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는 글을 올리셔서 그게 언론에 일부 소개가 됐었습니다.

혹시 큰 문제가 없다면 그 전문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알기로는 장 판사님하고 한 두세 분 계셨던 것으로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른 판사님들도 불법사찰에 대해서 사찰이다, 규탄하는 내용이셨는데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김영배 위원 조금 전에 워낙 많이 해서 가지

고, 소병철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일부 포함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4월 3일 자로 보냈다고 하는 고발장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데, 왜냐하면 거기하고 세계일보가 보도한 3월 달에 작성했다고 하는 대검의 문건과 내용이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제보가 있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여쭙보겠지만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3월 달에 작성했다고 하는 대검 보고서, 그 두 가지를 제출을 해 주시면, 그 내용이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장관님,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은 고발들을 해 왔는데요. 어떤 사건들을 고발했는지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추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월성원전 관련해서 대전지검에 작년 10월에 고발을 했는데 그 사건 고발장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 이 부분도 자료제출을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더 이상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현안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권성동 위원님이 먼저 거수를 하셔서 권성동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여당의 김남국 위원님 또 유상범 위원님, 김영배 위원님 이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순서 말씀드렸고요.

권성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동 위원 법무부장관님, 대장동 특혜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정확하게는……

○권성동 위원 내사 중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돼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서 수사가 개시됐습니다.

○권성동 위원 알겠습니다.

화천대유 대장동 특혜사건은 딱 떨어지는 배임 사건입니다. 이렇게 연일 모든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고발한 선거법 위반사건을 공안부에 배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겠다는 의지가 검찰

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것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지요.

민주당이 고발한 사건은 신속하게 처리하고 모든 언론과 우리 당에서 주장하는 대장동 특혜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주장에 대해서는 목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치검찰이지 뭐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건을 갖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것을 보면서 ‘아, 이재명 후보가 다급하기는 다급했구나. 정말 이 사안의 폭발력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좌우할 정도로 크구나’ 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했다고 나는 봅니다. 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논거가 없고 논리가 없고 근거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 사업의 주체가 뭐고 누가 이 사업을 설계를 했고 이 사업의 수익자가 누구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관계자에 대해서 쪽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느긋하고 여유 있고 잘 받아치는 이재명 후보가 드디어 이것이 자신의 정치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우선 보십시오.

이 사건, 성남시에 무슨 4800억 줬다 그러는데 이것은 민간개발로 해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대장동은 아파트 건립만 하면 무조건 팔리는 데입니다. 100% 분양되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00% 성남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면 훨씬 더 많은, 4800억이 아니라 1조 원 가까운 이익이 성남시에 떨어지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런데 1억을 투자한 사람이 1000억을 갖고 가요. 3억 투자해서 4000억의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특혜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개발업자들이 그전 김병량 성남시장부터 엄청나게 공을 들였어요. 안 되니까 성남시장선거할 때 절반은 이재명 캠프에 보내고 절반은 국민의힘 캠프에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가 되니까 그 갔던 사람들이 설계를 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것을 누가 결정했습니까? 이재명이 결정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그전에 씨세븐이라는 민간개발시행사가 이것을 했어요. 이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땅 소유주들한테 계약금으로 1250억을 준 거예요, 1250억. 그러면 결국은 10%를 계약금으로 주잖아요.

토지가를 1조 2500억 원으로 계산한 겁니다.

그런데 성남개발공사가 이것을 하면서 땅값을 얼마 줬습니까? 6000억을 준 거예요. 민간개발업자는 1조 2500억을 생각했는데 이재명의 성남개발공사는 6000억을 준 거예요. 결국은 원 소유자들한테, 원주민들한테 6500억을 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것을 갖고 민간투자자들에게 어마한, 막대한 이익을 준 겁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배임이에요. 공영개발을 해도 100% 성공하는 사업을 민간업자들하고 나누어 먹은 것, 이게 시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이고요.

두 번째, 원주민들한테 1조 2500억 줄 돈을 6000억밖에 안 준 것, 6500억 원을 결국은 민간개발업자하고 성남시가 먹은 것도 배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신청을 했던 화천대유의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있고 두 번째가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이 있고 세 번째가 산업은행 컨소시엄이 있었어요.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제안을 어떻게 했냐? 5000억 상당의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수익은 지분대로 분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이 성남시에 돌아갑니다.

그런데 화천대유는 어떻게 했냐? 기반시설 포함해서 5500억 원을 보장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들이, 민간투자자들이 갖고 가겠다는 구조예요.

이 메리츠증권 제안서 내용이 나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을 입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리츠증권 제안대로 하면 성남시에 더 많은 이익이 가는데 화천대유로 간 거예요. 결국은 뭐냐? 여기에 유동규하고 화천대유 관계자들하고 사전에 다 공모를 한 거예요.

이것 수사하면 금방 밝혀질 일입니다, 지금 수사하면. 평가도 엉터리고요. 공고기간도 보통 60일에서 90일 하는데 45일 날 끝났어요. 그리고 보통 건설사들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1조 이상의 은행들로 하여금 이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은행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들어오라고 한 거예요. 이게 개발사업에서 이 사건이 최초입니다.

그런데 투자는 은행이 제일 많이 했어요. 하나은행이 43%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익은 누가 제일 많이 봤냐? 6% 투자한 민간투자자들이, 천화동인·화천대유 관계자들이 이익은 다 갖고 갔어요. 43% 투자한 하나은행은 결국 이자 상당밖에 못 얻었습니다.

어떻게 지분이 43% 있는 사람이 제일 이익을

적게 보고 지분이 제일 적은 6%인 천화동인이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난 이런 계약서 처음 봅니다, 이런 계약서 처음 봐요. 너무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성남1공단 공원 조성하는데 2760억이 들어갔다 그러는데 정말 2760억이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니까요. 저는 이것 뺄 뒀기했다고 봅니다, 뺄 뒀기했다고.

그리고 보통은 보통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우선주가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1분만 더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것은 성남시 관계자들, 유동규, 김만배 그다음에 이 수익자인 YTN의 배 모 기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공모해 가지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갈 돈 절반을 자기들이 먹은 거예요.

하나은행이 지분이 43%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익을 제일 적게 봐요? 6%밖에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의 대부분을 다 갖고 가잖아요. 이래 놓고 이재명 후보가 적반하장 격으로, 내로남불 격으로 우리 당 원내대표를 고발을 해요? 그렇다고 이 비리와 부정이 숨겨집니까?

저는 검찰에서 빨리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장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권성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2부에 배당돼서 수사가 개시된 이 사건의 수사개시의 원인은 이재명 지사 측에서 국민의힘 몇몇 분들을 피고발인으로 해서 선거법 위반의 고발을 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선거법 위반의 핵심은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천대유의 소유자가 누구냐, 또 배임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것은 결국 특혜를 줬는지 그 여부기 때문에 이 고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건의 진상이 규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권성동 위원** 특수부를 동원해야지, 특수부를.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남국 위원** 안산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권성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과 다른 것들이 너무 많아서……

○**권성동 위원** 전혀 없는데……

○**김남국 위원** 기가 막혀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너무 황당한 이야기들이 많았었는데요.

너무 단순하고 쉽습니다. 민영개발로 그냥 놔뒀으면 민간이 모든 이익을 다 가져갔을 것을 공영개발로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공공의 이익을 가져갔던 겁니다. 이것 모든 이익을 민간으로 가져가게 하려고 했던 것들이, 뇌물 받아 가지고 민간으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인 한나라당 때 일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그것부터 사과해야 되는 겁니다. 뇌물 받아 가지고 공공으로 해야 될 사업들을 민간으로 하려고 했던 것들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되는 데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그 과거의 잘못들을 사과하지 않고 적반하장 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잘한 사업을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이렇게 덮어씌우는 게 황당합니다.

LH에서 원래 2004년도에 공공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 2009년 10월 7일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 2009년 10월 20일 신영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사업 포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민간하고 경쟁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포기하라고 종용합니다.

그래 가지고 실제 LH 사업, 공영개발사업을 철회합니다. 공영개발사업 철회해 가지고 민간에서 사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권성동 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사업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권성동 위원** 마이크 줘, 대답할 테니까.

○**김남국 위원** 5500억, 성남시에서 가져갈 이 5500억도 민간으로 다 사업이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권성동 위원** 100% 공영개발했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김남국 위원** 100% 공영개발 못 합니다. 그것 못 하게 막은 사람 또 누구니까? 바로 그 당시의 새누리당입니다.

○**권성동 위원** 뭘 못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김남국 위원** 보여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관련되어서 2010년에 이재명 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고 불로소득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

렇게 민간으로 해 가지고 다 해 쳐먹으려고 했던 것 안 된다고 해서 공영개발로 돌립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하기 위해서 대장동 공공개발 방식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성남도시개발공사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남시의회에서 계속 끝없이 부결시킵니다. 그래서 2010년에 계속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에 늦게 돼 가지고 할 수 있던 것을 2015년에야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시장은 한나라당에서 계속 민간에서,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안겨 주려고 했던 것을 막아 가지고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지금 뒤집어먹으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5503억 원이라고 하는 공공의 이익 환수 처음부터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권성동 위원님은 민간에서 사업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부채납받아 가지고 다 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권성동 위원님 법학 배우신 지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으신 것 같은데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이 그냥 기부채납이 아닙니다. 택지개발사업과 결부되어 있는 사업은 연관되어 있는 그냥 기부채납이 아니라 한참 10km 떨어져 있는 구시가지의 원도심에 있는 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기부채납이 어려운, 다른 사업을 결합해 가지고 개발했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려운 사업을 공공의 이익을 환수받았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이 평가받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나중에 시간이 흘러 보니까 땅값이 올라 가지고 민간이 너무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 아니냐고 해 가지고 중간에 인허가 조건을 변경을 해서……

○권성동 위원 여기다 질의해, 나 보고 하지 말고. 김남국 위원, 저쪽 보고 얘기해,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김남국 위원 이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더 환수하기 위해서 인근 터널 부지의 사업비를 사업자에게 부담시켜 가지고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이렇게까지 사업자가 가져갈 이익을 빼앗아 가지고 성남시민들에게 돌려준 겁니다.

○권성동 위원 누가 믿나, 그것을.

○김남국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공공의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굉장한 노력을 했다고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 지금 나한테 묻는 거야? 뭐 하는 거야?

○김남국 위원 예, 저는 그렇다고 보고요.

○전주혜 위원 수행실장답네요. 여기 국회의원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김남국 위원 그래서 법무부장관님, 지금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거를 한 160여 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된 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선거철입니다. 더군다나 선거도 그냥 선거가 아니라 대통령선거, 양 주요 정당의 내부 경선이 지금 치열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문제 제기들이기 때문에 법과 원칙 그리고 명확한 절차에 따라서 신속하게 이 사건이든 저 사건이든 규명이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영향 여부도 중요한 고려요소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실제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위원 그리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성남 의틀이라고 하는 SPC 회사를 설립을 해서, 준공영 방식의 회사를 설립해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렇게 대장동 개발사업을 준공영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부지 매입이라고 하는 데에 굉장한 사업비가 필요하고 이 부지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지방채 발행과 관련되어서는 총액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걸려 있어서 전년도 예산의 10% 제한이라든가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고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분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민간 조달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시에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의 상황을 살펴보면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었던 것이 객관적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성남시의회에서 새누리당의 시의원들도 당시 대장동의 수익성을 담보하지 못해서 민간투자가 있을 수 있겠냐는 이런 지적을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당시에 시의회에서 지적

을 했던 여러 시의회 의사록을 확인을 했었는데요. 시의회의 그런 여러 가지 객관적인 지적사항들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민간사업자들이 얻은 수익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비판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그런 것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다 하셨나요?

○**권성동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권성동 위원** 아니, 김남국 위원이 이재명 후보의 수행실장인 건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국정질 의라는 것은 국회의원이 정부를 상대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동 논란에 대한 저의 지적에 대해서 수행실장으로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충성심을 보이는 건 좋은데 질의과정에서 제 이름을 계속 거론하면서 저를 야단치듯이 얘기해,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하면서.

나는 국회의원 생활 4선 하는 동안에 저런 태도는 처음 봅니다. 그냥 내 주장에 대해서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아니, 동료 위원에 대해서 야단을 치듯이 하는 것, 감정표출하는 것을 보면서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좀 더 수양을 쌓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노련한 사람이라면 제 이름 거론 안 하고 자기주장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제 이름을, 심심하면 ‘권성동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십시오. 동료 위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남국 위원님.

○**김남국 위원** 제가 발언하는데 권성동 위원님께서 자꾸 저를 쳐다보면서 계속 저한테 말을 걸었기 때문에 권성동 위원님한테……

○**권성동 위원** 나한테 ‘권성동 위원님’ 하니까 쳐다본 거지.

○**김남국 위원** 저한테 말을 거니까, 그 말을 걸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말을 걸지 않고 제 질의를 방해하지 않았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서 그런 일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유튜브만 들어가더라도 그런 법사위의 장면들을 수십 번 비일비재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도 잠깐만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회의진행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사기 때문에……

○**위원장 박광온** 괜찮아요. 회의진행할게요.

순서대로……

○**박주민 위원** 간사님, 그만하시지요. 그러면 저희도 계속합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 아니, 나한테 ‘권성동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하니까 내가 쳐다본 거지.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조용.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잠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의를 촉구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주민 위원** 한 번씩 하셨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한 분씩 하셨으니까 좀 이따 하시지요.

○**전주혜 위원** 아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어떻게 방관하십니까?

○**위원장 박광온** 얼른 질의하시는 게 낫잖아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주의를 주셔야 됩니다. 주의를 주셔야지요.

○**전주혜 위원** 주의를 당연히 주셔야지요.

○**권성동 위원** 다시 한 번 더 할게, 저 주세요.

○**박주민 위원** 하시면 저희도 또 하지요.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위원장 박광온** 제가……

○**유상범 위원** 이것은 정도가 지나쳤잖아요.

○**전주혜 위원** 지금 질의시간이지 상대 위원 비방 시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한홍 위원** 마주 보고 있는 위원 이름을 고함을 지르면서 부르는 게 예의가 아니잖아요. 주의를 주셔야지요.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진행하십시오.

○**박주민 위원** 그냥 진행하시지요.

○**김남국 위원** 아니, 질문할 때 저한테 계속 그러면서……

○**위원장 박광온** 정숙해 주세요.

○**권성동 위원** 김남국 위원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님?’ 하니까 내가 쳐다본 것 아니야.

○**김남국 위원** 아니, 질문할 때 저한테 계속 말 거시면서 그러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질의하고 있을 때 저한테 거꾸로 그러면 되는 겁니까.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지적을 해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위원장님, 진행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김남국 위원 제 질의에 시비 걸면 그건 되는 겁니까?

○권성동 위원 내가 시비를 걸었냐고?

○김남국 위원 계속 시비 걸면서 아니라고 그러면서 비아냥거리고.

○조수진 위원 누가 시비 걸었는데?

○위원장 박광온 조금씩 양해하시고요.

○전주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김남국 위원 아니, 질의하는데 먼저 그러셨잖아요.

○전주혜 위원 어디서 지금 적반하장이예요?

○김남국 위원 적반하장이래, 먼저 그래 놓고.  
(「진행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광온 조용히 해 주십시오.

서로 조금씩 양해하시고 회의를 진행합니다.

○조수진 위원 조금씩 양해라고 하면 양쪽을 다 싸잡아서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쪽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셔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권성동 위원 김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권성동 위원님?’ 하니까 내가 쳐다본 것 아니야.

○김남국 위원 먼저 제가 이야기하는데 그러셨잖아요.

○권성동 위원 무슨 소리하는 거야, 도대체.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이 부분 정리를 하고 하시지요, 위원장님.

○권성동 위원 어이가 없네, 속기록 찾아봐.

○유상범 위원 아니,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면 앞으로 위원들이 상대방 위원을 질책하면서 질문을 하고 이름을 거명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이걸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가셔야지요, 진행을.

○권성동 위원 나한테 질문하듯이 얘기했잖아. ‘안 그렇습니까, 권성동 위원?’ 하니까 내가 쳐다보고, 나보고 답변하라는 얘기지.

젊은 사람이 말이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래야지, 아무리 감정이 상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박광온 서로 간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에 대한 상호배려와 존중을 갖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서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이와 같이 상대방 위원의 이름을 직접 거명하면서 현안질의시간에 위원에게 질의하는 형태로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위원들 상호 간에도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냥 넘어가신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반복될 것이라고 저는 심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쌓아 가면 결국 우리 관계가, 법사위에서의 운영은 점점 파행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운용의 묘를 살리실 수 있는 지혜가 충분하시니까 잘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1억 투자해서 1000억 번다 이렇게 하면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말씀하십시오.

○유상범 위원 아니, 묻잖아요. 지금 말했잖아요. 투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런 데 관심 가져 본 적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관심 가져 본 적 없어요? 그런데 투자하라면 투자하시겠어요?

지금 이 대장동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장동 시행사업 자체는 성남의뜰이라고 하는 SPC이나 실제 운영주체는 성남개발공사입니다. 그리고 성남개발공사가 이 전체 시행사업을 다 주관하면서 진행을 해 왔어요. 성남의뜰이 성남개발공사에서 인허가 위탁수수료랑 보상금지급 위탁수수료 지급한 것 혹시 기사 본 적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뭐……

○유상범 위원 기사 보셨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정확하게 기억에 남지는 않습니다.

○유상범 위원 쉽게 말해서 성남의뜰이 사업을 한 게 아니라 사실상 성남개발공사가 이 사업을 다 주관했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성남개발공사가 사업을 하는 그 대장동 개발사업에 리스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화천대유가 참여했는데 그 화천대유가 그 사업을 하는 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화천대유한테 5개 사업단지를 다른 경매에 의해서 받은 업자, 평당

2000만 원 정도 되는 업체보다 한 65% 되는 업체에 수익계약으로 줬다고 지금 변명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보면 이 변명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리스크 없는 사업, 실제 모든 사업은 성남개발공사에서 주도하고 있는데, 인허가와 토지보상을, 어떻게 거기에 참여한, 3억 5000만 원만 지급한 사기업이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여러 고발사건이 지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상법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러한 실체가 저는 수사로써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좀 봐 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공공개발로 시민에게 돌려줬다고 하는데, 우리 권성동 위원님께서도 밝혔지만 민간개발을 할 때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으로 1조 2000억을 예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남개발공사가 나서 토지 수용을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6000억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공공개발이라고 한다는 것은 원주민에게 최대한 이익을 줘야 되는 사업인데 실제로 원주민들은 민간개발을 했을 때 받아야 될 토지보상금의 2분의 1밖에 못 받은 겁니다. 이게 어떻게 공공개발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이익을 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안 맞지 않아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결국은 배임관계를 질문하시는 건데요, 그 부분 역시 전체적인 수사 단계에서 규명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법 위원** 그리고 우리가 사업시행자를 선정을 하는데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왔어요. 3개의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심사를 하는데 모든 민간개발이든, 공공개발에 있어서는 평가위원이 반드시 2분의 1 이상은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성남개발공사 직원 4명이 평가를 했어요. 이게 객관적인 평가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법원행정처장님, 사업평가를 하는데 성남개발공사가 지분 50% 이상을 가지고 있는 시행업체를 만들어서 그 컨소시엄이 들어왔는데 그 안에 평가하는 사람은 성남개발공사 직원이에요. 이 평가가 공정한 평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

○**유상법 위원** 객관적으로 말씀하시면 돼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정확한 정보가 없어 가지고요 지금 즉답드리기가 좀……

○**유상법 위원** 공수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객관적 평가가 되겠어요? 공정한 평가 위원 선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것은 좀 검토하고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상법 위원** 일응 그렇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없겠지요.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도 적어도 평가위원들을 외부위원으로 2분의 1을 넣어서 객관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외관은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외관조차 안 만들고 성남개발공사가 투자한 시행자가 만든 컨소시엄이 들어와서 입찰에 참여하는데 성남개발공사 직원 4명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세상에 아무리 짜고 쳐도 이렇게 대놓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어디 있습니까? 남이 봐도 금방 알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공공이익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는 수익을 적정하게 공공개발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50억 투자한 사람 중에 3억 5000을 가진, 7%를 가진 사람은 보통주로서 1820억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사업협약을 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공개발이라는 것은 거기서 나는 수익을 가능한 한 지역민을 위해서 재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법적으로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우선주의 형태로 1830억만을 가져가고 나머지 이익을 민간업자가 다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보면 이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공공개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공수처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유상법 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법률가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러니까 절차 위반이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 위반이 실제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사안에서 따져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상법 위원**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은 제일 중요한 게 절차에서 짜고 치는 고스톱을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게 하나, 그다음에 거기서 남긴 수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협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그 협약을 맺지 않고 7%밖에 투자하지 않은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수익을 다 가져갈 수 있게 아예 보장을 해 준 것 하나,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큰 문제고 이게 공공개발의 면피만 쓴 사실상 민간업자들에, 민간 참여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양두구육의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이게 그래서 배임이라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은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오늘 뜨거운 말씀들이 나뉘지고 있는데요. 법사위인 만큼 저는 근거와 증거 그리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서로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객관적인 자료로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그래서 저도 앞으로 보겠지만 고발도 이루어진 것 같고 한테 추측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내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기 위해서 근거 있게 한번 질문을 해 보겠습니다. 제보를 제가 받은 게 있는데요.

공수처장님,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고 하는 텔레그램의 내용, 고발장의 내용이 세계일보가 보도한 바처럼 3월 달에 대검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그 보고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

그 말은 뭐냐 하면 4월 3일 날 손준성이 김웅 의원한테 보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결론 부분에서는 선거 개입 목적으로 허위 기획보도를 했으니까 피고발인들, 즉 정치인들 유시민, 최강욱 의원 등등 포함해서 기자들 포함해서 이분들을 선거 개입 목적으로 처벌해 달라고 결론은 되어 있는데 그 전체 내용이 윤석열 후보와 그 가족, 장모·부인 등에 대한 변론요지서와 같은 내용으로 다 작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사실상 3월 달에 대검에서 작성했던, 검찰총장 가족과 관련된 대응을 위해서 작성했다고 하는 그 자료와 내용이 사실상 같다 혹은 아니면 상당히 유사하다 이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의 변론요지서와 같다는 게 ‘윤석열’이라는 단어가 그 고발장에 보면 4월 3일 날 보낸 고발장에 서른여덟 번 등장한다 이렇게 저한테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런 거랍니다. 2019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진행되었던 윤석열 총장과 그 가족들에 관련된 각종 의혹과 그 보도에 대한 변론, 해명 이런 내용으로 상당 부분을 채워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처장님, 혹시 내용 좀 확인해 보셨나 해서 여쭙어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만약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4월 3일 날 보냈던 그 고발장의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도저히 검찰의 아주 요직 자리가 아니면 다른 데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까지 포함해서, 진정사건들까지도 포함해 가지고 작성된 보고서와 그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게 들어가 있다면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내용들도 아닐 테고, 이게 수사기법상도 봐서는 상당히 의심할 만한 대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직 검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4월 3일 날 고발장이 대검에서 작성한 보고서하고 상당히 유사하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말씀하신 의혹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감안을 해서……

○김영배 위원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또 있는데요. 이날 4월 3일 날 아침 10시 12분경부터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텔레그램을 전송하기 시작하고 고발장은 오후 4시 19분경 그리고 그 전에 1시 47분경에 실명 판결문이 전달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문제는 그 내용에 보면 그날 아침에, 4월 3일 날 아침에 유시민 씨가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아침 7시 45분부터 8시 반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 중에 보면 ‘현직 검사장은 볼드모트인가’ 이런 내용들로 제목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는데요. 그런데 고발장에 보면 ‘유시민은 4월 3일 MBC 라디오에 출연하여’라고 그 고발장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방송된 것을 보고 그 고발장을 쓴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간단 말입니다.

두 번째가 최강욱 의원이 그날 오전에 전북도의회에서 발언을 합니다. 그 내용을, 고발장에 보면 ‘피고발인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검찰과 언론이 유착된 선거 개입에 대해서 쿠데타로 생각한다고 발언했다’라고 고발장에 쓰여 있다고 하네요.

당일 날 오전 11시경부터 이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오후에 전송된 그날 4월 3일 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에 보낸 고발장에 당일 날 발언된 내용들까지도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상당히 개인을 찍어서 사찰한 것 아니냐, 아니면 특정인들을 찍어 놓고 모니터링을 계속 조직적으로 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기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

○김영배 위원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검찰에 의해서 작성됐다고 한다면 검찰조직이 조직적으로 개인과 정치인에 대해서 찍어 놓고 사찰을 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만일 말씀하신 사항이 다 사실이라면 저희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범위에 당연히 검토해야 될 사항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배 위원 1분만 더 주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인게요 어떤 고발장을 작성하고 할 때 보통 보면 증거를 수집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논거를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저는 변호사 업무를 안 해 봐서, 검사 업무를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만약에 법적으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려면 그냥 단순한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것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판례에 의해서 이게 어느 정도의 문제가 될지를 다 가늠을 해 가지고 앞뒤를 맞추고 그렇게 해서 도움이 되는 사실과 도움이 되지 않는 사실을 구분해 가지고 작성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작성할 수 없는 것을 당일 날 유시민, 최강욱 이렇게 아침에 방송하고…… 최강욱 의원 같은 경우는 방송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이 고발장에 당일 날, 만약에 손준성 검사가 김웅한에 보낸 그 고발장의 내용에 그대로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도대체 어떻게 작성이 됐겠냐는 말이에요. 검찰이 이것

을 조직적으로 만약에,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만 한 건지 혹은 검찰조직 다른 데가 더 동원된 건지 알 수가 없지만 만약에 여러 개 검찰의 방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수사정보정책관실 말고도 관련이 있다면 이것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검찰총장 아니고서 이것을 어떻게 지시를 하겠습니까?

이것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는데, 공수처장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그 부분 실체적 진실도 규명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배 위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제 국정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 꼭 제가 확인하려고 하니깐요 꼭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영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순서에 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박성준 위원님 그다음에 조수진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이수진 위원님 그다음에 윤한홍 간사님, 박주민 간사님이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국민의힘 전주혜 위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오늘 여러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만 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지사의 판교 대장동 특혜의혹 관련한 특검법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대선과도 관련이 있는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법안이 상정되기를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이 관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만큼 오히려 빨리 이 특검법안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써 이 대장동 특혜의혹이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명명백백히 밝히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법무부장관님께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판교 대장동 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발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 사주 관련해서 중앙지검도 조

사를 하고 또 대검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아주 여러 기관이 광속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의 판교 대장동 특혜 관련한 사건도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신속히 규명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전주혜 위원** 다시 한번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고요.

최근에는 지금 이재명 지사 등에 대해서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이 됐다 이러한 보도도 있는 만큼 이것은, 아까 여당 위원님들은 ‘이것이 민간에게 돌아갈 게 오히려 공공개발이 복합됨으로써 성남시가 이익을 얻은 게 그게 무슨 잘못이나’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민간개발이 아니라 개인개발이지요, 개인개발.

화천대유라는 이 공고 전에, 성남의뜰이 시행사업자로 그렇게 선정되기 일주일 전에 만들어진,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경험도 없고 그 대표라는 분은 법조 출입기자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였던 그런 분입니다. 그런 화천대유 그리고 또한 천화동인 여기가 3억 50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4000억 원 넘는 배당금을 가졌다는 것, 바로 이것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공정의 가장 큰 포인트고요.

그렇게 된 데에는 그 이상한 내용의 계약서가 당연히, 흔히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불공정한 계약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을 지금 현재로는 사실 믿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장관님 말씀하시니까 신속한 수사를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공수처장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박광은 위원장, 박주민 간사와 사회교대)

공수처장님, 그동안에 공수처가 출범한 이후에 정부 여당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좀 마땅치 않은 점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흐뭇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이 공수처를 만든 목적, 정권 비호하고 야당 탄압하는 이 역할을 아주 선봉적으로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6일에 친여 성향의 시민단체가 고발사주 의혹을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을 비롯한 여러 명을 고발을 하자마자 공수처가 3일 만에 광속도로 입건을 했고요. 그리고 9월 10일에 압수수색영장을 김웅 의원실에 집행을 했습니다. 김

웅 의원은 참고인, 피고발인 신분이나 피의자 신분이 아니라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참고인 신분의 의원에 대한,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공수처가 어떻게 보면 수사관행을 좀 모르는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날 이루어진 그 압수수색영장의 불법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이 자리에서 따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님을 비롯한 그날 나온 수사검사와 또한 조사관들을 지금 고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에서 불법성의 여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9월 10일에 아주 시끄럽게 압수수색영장 집행하러 나왔는데 결국은 그날 다 만료를 못 했고요, 완성을 못 했고. 이제 9월 13일에 다시 영장 집행을 했는데 그날 그렇게 호기 있게 시작한 것과는 달리 김웅 의원실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128조에 따라 증명서를 교부합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가져가지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필요한, 과도한 압수수색이었다 이러한 유감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입건된 사건은 그러면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 중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구체적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수사상황을 말씀드리기에는 곤란합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광속도로 공수처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고발되자마자, 고발장이 제출되자마자 지금 조사한 것 아니겠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이게 그 신문기사인데요. 공수처가 빨리 협조해 달라고 전화를 했다는 언론기사가 지금 나왔어요. 조성은 씨의 말에 의하면 공수처는 애초부터 공익신고자 절차를 다 준비해 뒀으니까 오자마자 해 줄 수 있으니까 빨리 좀 협조해 달라, 이런 전화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공수처에서 조성은 씨에게 이런 전화한 사실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정확한 것은 모릅니다만 일부 와전이 된 것 같고요. 저

회가 내부고발자……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1분 더……

○위원장대리 박주민 예, 1분 더 드리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아니, 처장님, 이러한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는지 먼저 말씀해 주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러니까 전화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누가 했는지 그리고……

○전주혜 위원 전화를 한 사실은 있어요, 조성은 씨하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러니까 수사팀과 조성은, 지금 제보자로 되어 있는 분하고 통화를 한 사실은 있는 것 같고요. 그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의 대화가 오고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수사에 협조해 달라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 공수처에는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 있다 그런 것을 설명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수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박지원 국정원장도 지금 고발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빨리 결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 부분도 빨리 결정을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언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입건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3일이 지난 지가 오래됐거든요. 바로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그런 시비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붙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박주민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마지막에 두 사건을 비교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검찰하고 다른 제도가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권친화적 수사 때문에 고소·고발이 되더라도 입건을 가급적 줄이자는 차원에서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

할지 불입건할지 아니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할지 이렇게 결정해서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고소·고발장을 많이 봐도, 2000건이 넘는 고소·고발장을 봐도 어떤 고소·고발장은 구체적인 팩트가 아주 상세하게 잘 적시가 되어 있는 고소·고발장도 있고 관련 증거라든지 자료가 잘 붙어 있는 고소·고발장도 있고요. 팩트 자체가 막연하게 돼 있고 자료도 없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기초조사기간이 이 건이 4일이었으면 다른 건도 4일이어야 된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장은 저희가 지금……

○전주혜 위원 잠깐만요. 지금 해명의 시간이 아닙니다. 중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주민 위원장이…… 위원장에게 발언을 요청하셨고요 제가 하셔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저한테도 추가질의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박주민 이후에 추가질의시간은 간사님하고 협의해서……

○전주혜 위원 추가질의시간 주시면 그때 다시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초반에 전주혜 위원님께서 김웅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원에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는 피압수자한테 그 영장의 원본을 제시하고 영장 집행하는 게 원칙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이걸 제가 물어본 게 아닙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저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문제가 있다면……

○전주혜 위원 위원이 질의한 게 아닌데 지금 대답하는……

○위원장대리 박주민 처장님,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뭔가 문제가 있었다면 고소·고발해 주신 그 사건, 불법수색이라는 사건이나 법원에 이제 준항고가 제기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항고사건 그 두 사건에서 이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주민** 처장님, 정리해 주시고요.

김용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위원** 경기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장관님,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말씀드렸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고발한 사건 리스트를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이렇습니다. 문무일 총장 시절에 고발했던 사건 그리고 윤석열 총장 시절에 고발한 사건, 현재 김오수 총장 시절에 고발한 사건들 리스트와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관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발 사주사건을 아마 검찰에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사건을 전후로 해서 굉장히 또 굵직굵직한 검찰의 권한남용이 의심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사건들, 뭐 채널A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관통하는 게 핵심적인 증거가 한동훈의 휴대폰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한동훈 휴대폰에는 이 고발 사주사건의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여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한동훈 휴대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관심을 갖고 그 부분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국민들은 많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보낸다 만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한데 계획에 대해서 짧게라도 말씀 주실 수 있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니깐요.

어쨌든 그 부분은 규명이 돼야 되고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건 저런 사건과 다 연관성을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김용민 위원** 장관님께서 수사의 필요성이 높 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사건 등과 관련해서 검찰과 혹시 수사공조가 있거나 상호협조가 되고 있거나 하는 것들은 좀 있나요, 아니면 각자 그냥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건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사실은 공수처법상 수사대상으로 돼 있는 범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공무상 비밀누설이고 검찰은 이제 관할을 가지고 있는 게 공직선거법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각자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각자 하고 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손준성 검사 휴대폰을 압수수색했잖아요. 거기에 보면 4월 1일 날 손준성, 한동훈, 당시 대검 대변인이 45회의 카톡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날은 30여 차례의 카톡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4월 3일 날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전달 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휴대폰 압수수색하셨는데 아마 휴대폰을 변경해서 내용이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성,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이고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성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보시는데 제가 아까 협조를 질의드렸던 게 필요에 따라서는 공수처에서 한동훈 검사의 휴대폰도 역시 압수수색해서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도 수사기관으로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으면 증거를 찾아서 수사를 할 것입니다.

○**김용민 위원**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님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이 신속하게 초반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아마 보안을 잘 유지하고 계셔서 수사가 진행되지만 보안을 유지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공수처에서는 수사대상이 윤석열 후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해서 수사하는 것 아니냐 이런 국민적인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

을 한번 주시지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는 사실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고려는,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유불리는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단 수사가 시작된 이상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것이 선거에 대한 영향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신속한 수사를 기대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일정을 고려치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시고 신속한 수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는데 혐의점이 조금 더 확인되면 소환조사하실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김용민 위원** 혐의점이 인정된다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것은 가정적인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김용민 위원** 당연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면 소환할 것이라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고발장에 보면 명예훼손사건으로 고발을 했는데 명예훼손사건의 피해자가 윤석열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명예훼손이나?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보면 채널A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 이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채널A 사건은 굳이 하자면 한동훈이 명예훼손의 피해자겠지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은 굳이 하자면 피해자가 김건희 씨일 겁니다.

윤석열 당시 총장은 이 두 사건의 피해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한 점 발견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사실은 수사와 관련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항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수사와 관련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충분히 이해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이 매우 이상하다라는 점은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봐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유의하겠습니다.

○**김용민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 더 질의드릴게요.

수사정보정책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혹시 잘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저희도 대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직제규정이란지 이런 걸 통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위원** 수사정보정책관의 업무범위가 어떤 것인지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고, 수사정보정책관과 검찰총장과의 관계는 확인하셨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수사와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 같습니다.

○**김용민 위원** 확인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수사범위에 들어가면 당연히 확인합니다.

○**김용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겠습니다. 충분히 수사하시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실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민** 다음은 박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준 위원** 중구성동구울의 박성준 위원입니다.

부동산 얘기할 때 보면 지금 시점으로서 부동산을 자꾸 보는데 2009년, 10년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그 시점은 이명박 정부였는데요. 하우스 푸어라는 말 장관님 들어 보셨지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빚을 내거나 집을 샀을 경우에 빚도 못 갚고 상당히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그러다가 박근혜정부 들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들어오면서 2015년, 16년 어떤 조치를 하느냐 하면 LTV·DTI를 완화하면서 집을 사라, 빚내서 집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부동산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건데 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 당시 이래서 상당히 올랐을 것이다 이런 추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야 될 것 같고요.

(박주민 간사, 박광온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리고 장관님,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을 두 가지로 나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공개발로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그 당시 주요 인물들이 로

비를 통해서 민간개발로 가다가 다시 이제 이제 명 후보가 등장하면서, 성남시장 되면서 공영개발, 그러니까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을 합작하는 그런 개발을 했고요.

그러면서 실제 그 수익을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2009년, 10년 시점에는 부동산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공영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했다라는, 그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선진모델이 됐다, 그래서 업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이 문제와는 달리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천화동인이라는 관계사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벌게 됐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지요. 국민들의 시선도 그렇고요.

그러면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천화동인의 관계를 우리가 인물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질적 대표는 김만배였고 열굴사장이라고 해야 되나, 이성문 대표였고요.

그다음에 천화동인 관계사를 여기에서 다시 역으로 추적해 봐야 되는데 천화동인의 4호가 누구냐 하면 남옥 변호사예요, 남옥 변호사. 사시 37기더군요. 조현성 변호사가 있습니다. 로스쿨 2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 6호를 갖고 있는데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하게 돼요.

그런데 이 두 변호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박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법무법인 강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그렇지요. 법무법인 강남이었는데 강남의, 박영수 전 특검이 있었던 회사의 고용변호사로서 이 두 변호사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살펴보면 그러면 남옥과 조현성이 두 변호사가 실질적 소유했느냐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화천대유라고 하는 그 회사는 어떤 구조였느냐 하면 약간 인적 네트워크가 학연과 지연이 얹혀서 나오게 되는 건데 광상도 의원이 누구입니까? 박근혜정부 때 민정수석 아니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렇습니다.

○**박성준 위원** 화천대유는 2015년 2월에 출범하는데 민정수석의 아들이 연말에 취업을 해요. 연말에 아들이 취업하고, 박영수 특검이 누구입니

까? 아까 얘기한 남옥과 조현성, 천화동인 회사의 대표변호사였는데 그 딸이 어디에 취직합니까, 화천대유에 취직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경재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아닙니까? 5년 전에 여기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일해요.

그리고 김수남 전 총장, 강찬우 이분도 매우 중요해요.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이 이 화천대유의 고문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번 연결고리를 다시 또 찾아가야 됩니다.

남옥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2009년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자로부터 공공개발하는데 민간개발한 로비의 의혹으로 8억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수원지검장이 누구였느냐 하면 강찬우 지검장이었어요, 그렇지요? 그 당시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이 남옥 변호사 소송의 변호사가 누구였느냐 하면 조현성 변호사, 천화동인 6호 그다음에 박영수 이분이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뭔가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네트워크 관계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남옥 변호사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장관님?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재 외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외국에 왜 갔을까요? 이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핵심의 키워드, 키 인물이 누구냐 하면 남옥 변호사예요. 남옥 변호사는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정치적으로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의 핵심 로비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그 수사의 핵심 인물이었고 그다음에 남옥은 2008년도에 한나라당 청년위 부위원장을 해요. 그 당시에 강재섭 대표가 영입한 케이스로서 부위원장을 합니다.

지금 이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남옥 조사를 이루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의 네트워크 관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대장동과 관련된 공공개발과 공영개발에 의해서 수익구조를 받아서 5503억을 받아서 민간에게 돌려, 국민에게 시민에게 돌려 준 부분하고 이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관계된 사건은 별개로 봐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의 생각을 한번 여쭙보고 싶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어찌 됐든 지금 박성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화천대유, 천화동인을 둘러싸서 여러 법조인들이 등장합니다. 대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서 법조인들이, 그중에서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명도가 높은 법조인들이 등장하는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 그분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준 위원** 여기에는 법조인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커넥션이 있는 것이 아니냐, 메커니즘이 작동한 것 아니냐.

주요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한단 말이에요. 검찰 고위간부들이 다 등장하고 법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다 고문 역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남옥 변호사와 조현성 변호사는 실질적인 얼굴마담 아니냐, 거기에 뒷사람이 누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옥이 실제 미국으로 도망간 이유는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이 드러날까 봐 두려워서 빼돌린 겁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옥 변호사 신병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남옥 변호사가 구속기소되어서 1심에 무죄 나오고 2심도 무죄가 나오고 상고 포기로 확정인 됐는데요. 그 사건의 판결문을 읽어 봤습니다. 어찌 됐든 남옥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체를,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인물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박성준 위원** 1분만 더 주실래요?

김만배, 화천대유의 실질적 대표지요. 그다음에 이성문 대표 그다음에 곽상도 의원 다 성대 출신 아닙니까? 대학하고 상당히 연관되어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자료 조사를 죽 하다 보니까 천화동인의 실질적인 투자 자문하면서 전주 역할을 했던 분이 누구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인 최기원 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있는데 천화동인 4호와 연관이 돼요. 이것도 저는 상당히 의심되더라고요. 합리적 의심을 해 볼 만한 사안이 아닌가.

이 천화동인 4호에 남옥 변호사와 행복나눔재단 이사장과 관련된 부분이 왜 드러나게 되는 것인지.....

여기에는 모든 링크에 남옥 변호사가 있는 겁니다. 법조계, 정치권 이 연결구조에서의 먹이사

슬구조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장관님, 야당 위원들이 지금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 이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 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CG부터 띄워 주시지요.

조수진입니다.

공수처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 오늘 한 시민단체가 이재명 경기지사를 고발을 했네요.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저희 공수처에 고발한 거 말씀하신 거지요?

○**조수진 위원** 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이 고발 사유가 이렇습니다.

대장동 개발의 인허가권자인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 이재명 지사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을 가장해 민간에 막대한 특혜를 몰아 준 부동산 적폐의 완결판이다, 단군 이래 최대 부동산 적폐다 이렇게 고발이 됐네요.

고발취지도 다 알고 계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조수진 위원** 지금 대장동 의혹 언론보도 많이 나오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횡수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언론보도 대부분 다 장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 대서특필되고 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연일 지금 주요 일간지를 비롯해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지요.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사건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고발 사흘 만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입건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처장이 결정 내리신 거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최종적으로는 제가 결정을 합니다.

○**조수진 위원** 최종적인 결정은 당연히 공수처장이 가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입건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수처가 ‘언론에서 이야기했다’, ‘국민

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의 생각이 이렇다고 봐야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닙니다. 이 부분은 좀 와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그날……

○**조수진 위원** 공수처장님, 이거 전부 다 기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입건 사유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다’, ‘언론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 관계자의 발언으로 지금 나온 것 같은데 내용 자체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 언론보도가 다 잘못됐나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니요. 잘못됐다기보다 좀 와전…… 보도를 하다 보면 거두절미하고 와전되는 수가 있으니까요.

○**조수진 위원** 공수처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변인이 그러면 공수처장과 다른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것은 공수처의 입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되고 처장의 생각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점에 비춰 봤을 때 오늘 고발이 된 이재명 경기지사 이것도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다뤄야 되겠지요? 지금 언론에 대서특필되고 있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오늘 접수된 것을 오늘부터 검토를 할 겁니다.

○**조수진 위원** 고발 사흘 만에 입건이 되고 강제수사도 나섰는데 언론에서의 관심이 지대하고 국민적 관심이 높다, 언론에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공수처가 밝혔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공수처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이 있다고 보는 분이 많지가 않아요. 그 점도 공수처장님이 유념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자, 공수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나 하면요. 지난 3월에 김학의 불법출금 의혹 관련 피의자였던 이성운 당시의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의전을 하고 진술조서도 없이 티타임을 했습니다. 이때 공수처장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처장님 기억나시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그렇다면 처장님이 표방하는 인권친화적인 수사기구, 모든 사람에게 다 같아야겠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됩니다.

○**조수진 위원** 그렇다면 이런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면서 바로 입건을 하고 관련자 강제수사 나시고, 그러니까 이성운 전 서울중앙지검장과는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에 수사기관의 장으로서 조금 더 신중하게 처신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사과도 드렸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면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 때는 신중하지 못하셨다 이런 반성인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니요.

제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양쪽 의견을 균형 있게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사팀 의견도 들었고요.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이성운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의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성한다는 말씀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건 좀 약간 저희가 신중하지 못한……

○**조수진 위원** 약간 신중하지 못한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신중하지 못했던……

○**조수진 위원** 많이 신중하지 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뭐……

○**조수진 위원** 그래서 이 공수처의 수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객관적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전례까지 있기 때문에.

열흘 전인 9월 13일 박지원 국정원장의 이른바 제보 사주 의혹, 국정원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고발인 조사도 진행이 됐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면 열흘 전이에요.

입건됐습니까, 박지원 국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직은 아님

니다.

○조수진 위원 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가 곧 이제 처리를 할 것입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면 열흘이나 지났는데도 아직 입건이 안 됐네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까 전주혜 위원님이 여쭙보셨는데요. 어쨌든 기초조사하는데 양 사건에 지금 시간이 좀 다르게 걸리는 면이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처장님, 언론보도가 부족했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아닙니다. 사실은……

○조수진 위원 국민적 관심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입건기준은 사건사무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공수처가 직접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접 입건기준입니다.

○조수진 위원 입건기준 잘 아는데요. 그러면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과 비교해 볼 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판단이. 그렇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중요한 게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뭐가 다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인지 그다음에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범죄인지……

처음의 사건은 전현직 검사들 사건으로 저희들이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고……

○조수진 위원 자, 처장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까지 갖고 있는 사건입니다.

○조수진 위원 처장님, 우리나라 국정원장이 가장 지켜야 되는 게 뭐지요? 정치적 중립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정치적 중립을 명백하게 위반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법률도 필요가 없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수사대상에 국정원법 21조 정치활동 관여 금지조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다 어겼어요.

그리고 정치 9단 유인태 전 국회사무총장이 뭐라고 합니까? 박지원 제보 사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열흘이 지났는

데…… 이건 형평성에 비춰 봐서 맞지가 않아요.

1분 더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은 고위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좀 포함돼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처장님,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추가 의혹 보태겠다고 나서면서 과거의 징계자료를 사진으로 유출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지적을 받아 삭제를 했어요. 이 사건 역시 공수처가 지난 16일 날 접수를 받았습니까.

추미애 전 장관 입건됐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여기서 고위공직자범죄라 함은 고위공직자로 재직 중에 본인 또는 본인의 가족……

○조수진 위원 처장님, 이것은 징계자료를 사진으로 유출했어요. 그리고 이 역시 고발장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또 입건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정권과 가까우면 입건이 안 된다 이렇게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는데, 과연 공수처의 원칙과 기준이 뭔지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느끼고요. 또 수사대상도 선택적으로 정한다, 이것이 공수처의 원칙이 아닌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공수처의 입건기준에 대해서 지난 6월에 저희가 공제7호·8호 사건으로 옵티머스 또 모해위증 수사 방해 이런 사건들을 입건했을 때도 지금 법사위에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고 이번에도 왜 이렇게 유력 정치인을 입건했느냐는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저희 공수처가 검찰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게 지금 고소·고발이 있다고 자동적으로 입건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계한 것이 아니고 설립준비단부터 내려오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아마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하자, 그래서 자동적으로 입건돼서 피의자가 되는 것을 좀 줄이자는 취지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건을 할 때마다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도 차제에 이 기준을 폐지해 버리고 아예 검찰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의견까지 나옵니다.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인권친화적인 수사를 표방하고 입건을 줄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고 영국의 중대부정수사처(SFO)의 사건 케이스 매니저라든지 이런 외국 제도를 본받아서 만들어진 제도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몇 달 시행해 보고, 검찰과 똑같은 제도로 돌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수진 위원 처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제 생각에는 입건기준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저희가 만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조수진 위원 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려면 더 더욱이 이 잣대가 다르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그 부분에도 유의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또 한 가지는 죄가 되고 안 되고는 나중의 문제라든가 언론에서 다 얘기해서 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은 좀 와전된 것 같습니다.

○조수진 위원 와전이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조수진 위원 경고했습니까, 대변인 경고하셨어요?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내부적으로 그 부분도 논의를 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경고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도. 정정 안 하셨지 않습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내부적인 것이라서요.

○조수진 위원 그게 어떻게 내부적입니까, 기사 다 나왔는데, 언론보도에 따라서 입건한다고 그랬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와전된 것 같다, 발언 자체가 좀 와전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방역수칙에 따라 실내 환기를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회의를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딱 1분만 의사진행발언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광온 예, 말씀하세요.

○조수진 위원 국민의힘 조수진 위원입니다.

저는 박광온 위원장이 오신 뒤에 회의 분위기라든지 진행방식이 굉장히 바뀌었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오늘은 좀 서운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이 자리는 상임위이지 어떤 특정 후보의 캠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 후보의 캠프를 대변하는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계속해서 상대 위원의 이름을 호명해서 뭔가 잘못된 주장을 하는 것처럼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상대 위원이 그래도 4선 의원인데 그분을 향해서 ‘법학을 공부한 지 오래돼서 다 잊어버린 것 같다’, 이게 인신공격이거든요. 이런 걸 할 때는 위원장님이 제지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은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이라도 좀 지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회의 우선 진행하고요. 제가 회의 말미에 제 생각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소병철 위원 전남 순천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과 과거 미래통합당이 야합해서 총선 개입 시도, 고발 사주 의혹사건 이게 지금 이슈고 또 하나가 대장동 개발 의혹사건, 2건 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신속하게 의혹을 규명한다는 데 대해서는 장관님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소병철 위원 다만 진상규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빠르게 할 것인가는 방법과 단계, 절차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 PPT 좀 봐 주시면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특검이 총 열세 번 실시되었습니다. 그중 1차로 검찰 등이 수사를 하고 2차로 특검을 한 게 총 열한 번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번은, 한 번은 대북송금 특검으로 검찰이 수사를 유보했어요. 또 한 번은 검찰이 감찰을 하고 특검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열세 번이 다 일단 검찰에서 먼저 하고 특검이 됐어요.

심지어 최근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잘 아시지요? 상설특검법에 의한 첫 번째 특검도 역시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드루킹 사건, 전부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특검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지금 자금흐름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어요.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또 중앙지검에 관련 사건이 배당이 돼서 수사가 시작됐다, 말씀하셨지요?

지금 중앙지검 사건도 공직선거법 사건이지만 그 실체를 판단하려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런 듯합니다.

○**소병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정치공세라고 주장을 하면서 정치공세를 하고 있어요. 왜냐? 제가 지금 열세 번 특검 저기 열거를 해 봤잖아요. 한 번도 바로 특검을 간 적이 없어요. 이것 자체가 정치공세이기 때문에 법무부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좀 정확하게 지켜 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물론입니다.

○**소병철 위원** 대장동 의혹 진상규명 철저히 해야지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유착해서 총선에 개입하려 한 사건, 저는 정말 이 건 민주주의 근간을 부정하는 반헌법적인 국기문란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제가 지난 9월 6일 날 법사위에서…… 검찰이 수사를 편향적으로 한다 하는 것은 그동안 누차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이 고발해라, 더군다나 특정 정당하고 해 가지고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검찰 사상 처음 있는 일이에요. 정말 이거 어떻게 여기까지 가 버렸는가?

그다음 페이지 보여 줘 보세요.

저기 지금 보면 저 고발사건들이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마음에 맞지 않는 언론인들까지 포함이 돼 있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정치인·언론 이렇게 하는 반면에 자기 처가 식구들에 대해서는 검찰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비리를 비호하려고 했어요.

이렇게 한다면, 야당 유력 정치인 말씀대로 하면 민주주의를 도륙하는 거예요, 도륙. 그렇잖아요, 이게. 공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언론인 고발하고 계속해서 수사하고 망신 주고 이거 민주주의를 도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또 그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금 저기 판사 사찰 내용 중에 보면 참 민망한 것도 있어요. 판사가 전날 음주하고 늦게 일어나 가지고 불출석했다……

아니 법원행정처장님, 이게 사찰 아니고 뭘니까? 이게 지금 무슨 연예인에 대한 관심사항 써놓은 겁니까? 지금 처장님이 만약에 저런 일, 처장님이 전날 어디에서 술 잠수시고 출근시간 늦게 하고 이런 것을 검찰에서 들여다보고 있다면 처장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위축 안 되시겠어요? 위축되지요?

저기 지금 제가 예를 들어 봤지만 바로 이 건 정말 사법부를 붕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사법부를. 독재정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게.

다음 PPT 넘겨 줘 보세요.

앞서 말한 이 사건들 주모자, 윤석열 후보입니다. 검찰총장 퇴임 후 불과 118일 만에 출마 선언했어요. 또 149일 만에 국힘당에 입당해서 지금 대선주자로 나오고 있어요. 오죽하면 국힘당 유력후보께서 대국민사과 먼저 해라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이걸 지금 보면 과거에 군이나 안기부가 했던 총풍·북풍하고 뭘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장관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게? 오히려 지금 더 간교하고 차원 높은 민주주의 부정하는 거잖아요.

96년 4·11 총선 때 6일 앞두고 북한군 총 쏘는 북풍사건이 있었어요. 97년 12월 대선 때 한나라당, 북풍사건 기도했지요. 지금 이거하고 뭘 차이가 있냐, 오히려 훨씬 더 교활한 수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 건 결국은 복기를 해 보면 윤석열 후보가 검찰에서부터 대선후보 나오려고 염두에 두고 품앗이 고발 사주한 거다, 이거.

선불, 대선주자 되려고 벌인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해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1분만 더 주십시오.

장관님, 이렇게 중요한 사건, 대장동 사건 물론 중요해요. 국민들 만약에 거기에 부정한 의혹이 있다면 한 치의 의혹 없이 밝혀야지요. 그러나 그것은 의혹이 실제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부패사건입니다. 지금 고발 사주 사건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게. 끔찍해요.

만약에 그게 성공했다면 여기 있는 민주당 위원들이 자리에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장관님도 지금 그 자리에 없을지도 몰라요. 장관님 이것 정말 철저하게 수사하셔야 돼요. 이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반헌법적인 사건이다……

아니,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 한번 좀 해 보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우리 소병철 위원님 염려가 염려로 그치지 않도록 지금 수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옆에 공수처장님 계시지만 어찌 됐든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진상을 규명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병철 위원** 공수처장님도 정말 오늘 가슴 깊이 좀 새기셔야 돼요. 이게 지금 단순히 어떤 특정 정당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선거제도가 지금 까딱 잘못하면 붕괴될 사건이었어요. 공수처장님이 철저히 수사해 주셔야 돼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수진 위원** 동작을 이수진 국회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철 위원님께서 오늘 굉장히 분개를 하셨습니다.

장관님, 고발 사주 의혹이 최초로 보도된 게 9월 2일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쯤……

○**이수진 위원** 벌써 20일이 넘어가고 있는데 대

검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현재 대검이 진상조사 단계를 넘어서서 징계를 위한 비위혐의를 구체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아직 진상조사의 결과를 발표하거나 어떤 종료를 할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이수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진상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대검뿐만 아니라 공수처, 서울중앙지검, 경찰청까지 수사에 나섰는데 혹시 중복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저로서는 그런 염려들을 누차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현재로서는 유기적 협력체제가 그런 것을 걱정할 정도로 그런 상황은 아니다, 중복의 염려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긴밀하게 협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겠고 장관님께서도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위원님.

○**이수진 위원** 법원행정처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 기사를 보니까 본안사건 기준으로 법관 일인당 연간 사건이 464건이다, 이게 독일의 5배고 일본에 비해서 3배다, 그리고 법관 수를 독일 수준으로 하려면 법관 1만 2390명을 늘려야 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통계 맞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지난 2월에 전국법관회의에서도 응답자 89%가 법관을 증원시켜야 된다고 의견이 나왔던 거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이수진 위원** 이게 지금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오늘 지금 대장동 사건, 고발 사주 사건 모두 법원으로 갑니다. 법관이 신속하고 충실하게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법관이 부족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지요. 이것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재판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국민들은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법원에서는 법관을 못 뽑겠다고 하

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지금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자를 법관으로 임용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 부분에서 인력, 법관을 뽑는 게 너무 어려워져서 법조경력 5년 이상을 조금 더 연장시켜 달라고 국회에 협조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이 지금 납득하지 못하는 그 부분, 변호사 이렇게 많은데 왜 못 뽑아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먼저 하여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법원의 역할이라는 것이 재판을 청구한 국민들에게 충실한 심리를 거쳐서 타당한 결론을 신속하게 제시하는 것일 텐데 적지 않은 우리 국민들 그리고 소송관계인들께서 재판의 지체를 우려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위원님 말씀 말씀따라 법관 수를 늘려서 재판부를 확대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이 저희 법원의 바람인데요.

여전히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님들은 많이 늘고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와 같은 재판을 실행할 수 있는, 공정 타당하게 법률을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법리능력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선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의 난점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이 정성적으로 법조경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전문성과 능력 같은 것들을 필시 평가하는 절차가 전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선발과정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을 늘리기 위한 방안이 늘 전제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재야에 변호사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곧바로 법관 수의 증원으로는 이어지지 않는 지금의 문제점을 낳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미국의 경우에 선거로 뽑지 않는 법관의 경우 법관의 선발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고결성, 성실성도 있지만 법률지식과 법적 능력, 그러니까 사법적인 기질, 그와 연관된 전문적 경력 이런 것들을 우선시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법원은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희들 나름대로는 오랫동안 해 왔던 나름대로 제도의 장점을 살리되 또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가미하고 충분히 구현하는 방안을 나름대로 조금조금씩 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대해서도 국민들 또 의원님들의 많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지금 당장 현재도 그리고 앞으로도 꾸준히 어떻게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수행하는 법관들이 대단히 합리적이고도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발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선발제도를 계속 강구할 생각입니다.

○**이수진 위원** 지금 법조경력 5년 이상이 아니면 굉장히 수급상황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 명 이상을 뽑아야만 사실은 독일 같은 법률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1분만 더 주십시오.

지금 1만 명 뽑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정원이라도 채워야 되는데 5년 이상이 아니면 안 되는 절박한 사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역시 저희들이 선발했던 제도에 대한 재야 변호사님들의 믿음이 굳건하지 않아서인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최근 한 10년간 선발을 운영했을 경우에 지원자 수가 적습니다. 예를 들자면 5년 이상 정도를 해야만이 적어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구축한 절차를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그 분모, 임용대상 풀 자체, 지원의 현실 자체가 여러 복합·현실적인 이유, 여러 이유에 의해서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인 것이지요.

많이 지원해 주시고 많이 응모해 주신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 과정에서 나름의 기준을 통해서 선발할 수 있는데, 가령 예를 들자면 7년 이상을 뽑을 경우에 10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들이 지원하는 현실적 모습은 저희들의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게 당장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법관 수급의 어려움을 저희들이 절박하게 국회에 호소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수진 위원** 나중에 하여튼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도 투명하게 공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오늘 우리 법사위 현안질의에서 결국은 국민들 관심사항인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가 아마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가 우리

법무부나 법무부장관님도 계시지만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즉시 수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이런 문제가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쪽 들어 보니까 우리 김남국 위원은 공영개발로 해서 이익이 많이 생겼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제가 보면,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공영개발을 가장한, 참 교묘하게 가장한 민간개발, 그것도 민간개발이 아니라 특정 개인을 위한 개발이에요, 이게. 민간개발이라면 이익을 본 건설회사가 있어야 되는데 건설회사가 아니라 개인들이 3억 5000을 투자를 해서 4000억을 가져간 회대의 사기사건 비슷한 겁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 우리가 그것이 궁금한 거지요. 그것이 궁금해서 지금 오늘 물어보고 합니다.

그랬더니 참 설명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공영개발을 해서 5500억 수익을 가져갔다…… 거기 보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간 게 1800억 정도 되고 나머지는 공원, 터널 건설 이런 거예요. 그것은 공영개발이 아니라 민간개발을 해도 당연히,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요.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1800억을 가져가고 민간, 개인 7명이 3억 5000 투자해서 4000억을 가져간 거예요. 이것을 교묘하게 지금 말을 돌리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말 무늬만 공영개발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이었나, 한마디로 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자료도 제출 안 합니다. 성남개발공사나 성남시에서는 일체 자료제출도 하지 않고 있고.

또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느냐,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이재명 측에서. 또 여기서도 그런 이야기가 들린 것 같은데, 국민의힘 게이트인데 왜 국정조사나 특검을 반대합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지금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교묘한 공영개발을 가장한 민간개발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힘든 인허가, 토지수용은 공공에서 하고 아파트 분양은 민간에다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분양가 상한가 적용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획을 잘했으면 이러느냐.

그리고 또 이재명 지사는 수사에 100% 동의한다, 빨리 수사해 달라 하면서 또 수사가 안 되고 있어요. FIU에서 5개월 전에 자금조사해 달라고

경찰에 넘겼는데 경찰은 지금도 안 해요. 수사능력이 떨어지는 저 일선 서에다가 내려 보내 놓고 안 합니다. 거기다가 오늘 보니까 또 이낙연 전 총리는 검찰이 이렇게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이런 상황을 볼 때, 저도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정말 오랫동안 일했던 공무원 출신인데 이런 건 처음 봅니다. 자치단체가,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기획을 잘해 가지고 특정 개인한테 큰 이익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을 하다니 정말 머리가 좋다. 실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점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사업, 이재명 지사하고 관련된 이 사건의 대장동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 유동규라는 사람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당시의 기획본부장이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재명 지사가 시장 하다가 경기도지사 가니까 경기도까지 따라가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니까 캠프에서 일도 한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다음에 캠프에서 정책본부장 하다가 어제 그만두었던, 부동산 투기 때문에 그만두었지요. 이한주 그 사람 형제가 이한성, 화천대유의 상임고문입니다. 이재명 씨 선거법 무죄판결했던 권순일 전 대법관이 고문이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변호했던 강찬우가 자문변호사를 하고 있고, 여하튼 뭐 이것저것 제가 열거를 안 해도 이 사건 게이트에 관계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재명 지사와 특수한 인연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고 싶은 게 지난번에 손준성 고발 사주 의혹 갖고 정말 전광석화처럼 법무부, 검찰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때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대검 총장 측근이다, 대검 총장하고 가깝다, 대검 총장 밑에서 일을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계속해서 여당과 박범계 장관님이 그 박자를 맞춰 왔거든요.

자, 이 대장동 게이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세요. 이 정도면 이재명 지사가 지시한 거나 다름없어요, 이것은 그런 논리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렇지요?

저는 이런데도 불구하고 왜 검찰이 빨리 수사를 안 할까, 경찰은 자금 추적을 5개월 동안 왜 미적거리고 있을까……

장관님, 이것 빨리 수사해야 되겠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윤한홍 위원** 오래 끌면 끌수록 국민들 화만 나겠지요, 그렇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동감입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서 빨리 수사해서 밝혀 줘야 되는데 저는 장관님이 어떤 생각을 갖는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관계인들이 이재명 지사와 이렇게 특수한 관계에 있다면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그 당시에 지시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요? 이 정도 관계면, 지난번 장관님이 여기 법사위에서 답변하던 그 논리로 하면 저는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변하기 곤란하신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편면적으로 두 사건을 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운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실체는 아무튼 윤한홍 간사님이 계신 정당에서 누구 소유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윤한홍 위원** 왜 그러냐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다음에 특혜 의혹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측면의 실체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규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한홍 위원** 1분 더……

그러니까 지난번에 손준성 수사정책관이 대검 총장 부하라고 해서 윤석열 총장과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지시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추미에 전 법무부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준성에 대해서는 인사 청탁이 있었다’, 청와대와 민주당에서 인사 청탁이 있었다고 추미에 전 법무부장관이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준성이 수사정보정책관이니까 윤석열이 지시한 거다 이런 뉘앙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천대유는, 이것 보세요. 유동규, 이한성, 권순일, 강찬우, 박영수, 뭐 전원이 이 지사하고 특수관계입니다. 당연히 이재명 지사가 한 거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그런데 박 장관님 논리가 자꾸만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걸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말씀 좀……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아, 말씀하시나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고발 사주 건에 있어서 적어도 정당에 의해서 고발장이 들어오고 그리고 거의 판박이인 고발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있고요 그것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고, 그런 측면과 지금 말씀하시는 이 화천대유 사건의……

○**윤한홍 위원** 장관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일을 한 사람과 그 상사의 특수관계를 가지고 유추를 하지 마라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 말씀을 좀 들어 보시지요. 아무튼 이쪽이든 저쪽이든 진상규명을 잘하라는 그런 취지의 당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예, 그렇지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겁니다. 부하가 한 일이라고 해서 상사가 지시한 거다 단정을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화천대유도 그런 거다, 그 말씀드린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요. 자꾸 그 부분을……

그러면 그것 물어 주시라니까요?

○**윤한홍 위원**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아니, 그 부분을 물어 주시면 제가 답할게요.

○**윤한홍 위원** 예.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민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공수처장님,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피의자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박주민 위원** 아까 처장님께서 공수처에 사건이 고발된다고 해서 바로 피의자로 하지 않고 일정 정도 판단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경우도 그런 절차를 거친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박주민 위원** 그 절차를 거쳐서 피의자로 입건해서 수사하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한 겁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저희가 직접수사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요.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고발 사주 사건 관련된 검찰의 수사 진행상황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아까 말씀하시면서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거의 없다, 매우 낮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자 보도를 보니까 ‘제보자인 조성은 씨 핸드폰하고 USB를 포렌식했더니 지난해 4월 3일과 4월 8일 날 손준성 보냄으로 전달받았던 파일들을 다운로드받은 흔적이 발견됐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박 위원님. 저 역시 그것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러저러한 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주민 위원** 디지털 증거의 조작 가능성이 낮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 보도대로 해당되는 날짜에 다운로드받은 흔적도 나오고 그리고 디지털 증거 자체에 담긴 의미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후에 어떤 고발장이라든지 또는 고발장이 첨부될 것이라고 해서 같이 보냈던 자료들이 조작됐을 것이라 하고 하는 주장은 저는 점차 힘을 잃어가는 것 같고 점차 사건의 실체에 좀 접근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손준성 검사 등을 곧 검찰에서 소환해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런 절차도 앞으로 아무런 지연이나 이런 것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예정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공수처장님께서 답하셔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께 일단 여쭙보는 겁니다, 검찰과 관련된 보도라서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무리 없이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알겠습니다.

처장님, 아까 김용민 위원이 질의했을 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공수처가 수사하는 죄목과 검찰이 수사하는 죄목이 다르다. 그래서 각자 자기의 영역에서 해당되는 죄목과 관련해서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박주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이수진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공히 검찰과의 협력을 주문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수사를 그리고 조사를 대검이나 검찰에서 먼저 했기 때문에 아마도 더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실체규명에 있어서는 각자 영역에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협력을 통해서 그러한 자료들에 대한 충분한 소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명확한 실체규명으로 다가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에도 저희가 유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규명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도 유의하고 있습니다.

○**박주민 위원** 장관님도 혹시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물론입니다.

○**박주민 위원** 그러면 양 기관의, 검찰과 공수처의 협력이 앞으로는 보다 더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하고 믿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자료제공 요청 좀 하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저희가 아까 판결문 요청했는데요 그것 빨리 좀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박주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남욱 변호사 1심 판결문을 보면 그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2008년도 미래통합당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다고 나옵니다. 이후에 이 남 변호사는 2009년에서 2010년 LH 주도의 공영개발을 민영개발로 바꾸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구속기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문에 보면 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그 당시 국회의원과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진들 이름이 짝 나오는데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때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했는데요 당시 수원지검장이 강찬우 검사장이었습니다. 1심 재판 변호인이 법무법인 강남 소속의 박영수 전 특검과 조현성 변호사였고요. 1·2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2심 판사가 바로 지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검찰은 2심 무죄가 나오자 상고를 포기해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사건과 관련됐던 사람들이 화천대유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4호 소유자고요, 변호했던 조현성 변호사는 6호 소유자, 강찬우 전 검사장은 화천대유 자문변호사, 박영수 전 특검

은 화천대유 고문 이렇게 지금 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남옥 변호사 사건의 피고인, 검사, 변호사가 모두 연루되어 있는 희한한 모습을 지금 보여 줍니다. 굉장히 희한한 모습 아닙니까? 피고인과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지금은 한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또 누가 나오나? 광상도 의원의 아들이 등장하고요, 원유철 대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것처럼 신영수 전 의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피고인, 검사, 변호사 그리고 특정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 이름이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좀 밝혀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요구했던 남옥 변호사와 관련된 판결문 말고요.

법무부장관님, 남옥 변호사에 대한 공소장, 이 사건의 공소장도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4년, 2015년, 2016년의 수원지검 조직도, 이름과 직책이 포함된 조직도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뭐 특별하게 어떤 비밀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전 사건이고 또 이전 조직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행정처장님도 제가 부탁드린 판결문 빨리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알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주질의가 끝나고 보충질의에 들어갈 텐데요. 현재 의석에 계신 위원님들 가운데서 희망하시는 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범 위원님 하시고 김영배 위원님 하시고 조수진 위원님 하시고 소병철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유상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씩 하겠습니다, 5분씩.

○**유상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님, 지난 9월 6일 날 뉴스버스에 유출된 징계의결서 그다음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무단 공개한 징계의결서 유출경위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제가 말씀드렸고 장관도 살펴보겠다 이런 취지로 답을 했습니다. 지금 진상조사 들어

갔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뉴스버스에 보도된 그 징계의결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감을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진상조사를 정식으로 하셨냐고 묻고 있습니다.

지시하셨나요, 지시하셨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진상조사를 지시한 건 아니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에게 유출된 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옛날에 무슨 김학의 사건처럼 진상조사 지시를 따로 한 건 없어요, 명시적으로?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관실에 그 부분을 조사하라고 그렇게 지시한 바는 없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뭘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법무부장관 박범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확인하고 있는데 지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검찰국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검찰국에요? 검찰국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객관적으로 확인하려면 검찰조사를 하든지 해서 확인이 가능한 거지, 조사를 해야 확인이 되지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됩니까?

자, 조성은 씨가 9월 3일 날 한동수 검찰부장에게 공익신고자 보호 요청하면서 자료제출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9월 6일 날 한겨레 및 KBS에서 고발장 및 증거자료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유상범 위원** 공수처장님, 조성은 씨가 공수처에 그 자료제출한 게 언제입니까? 9월 8일 이후에 자료제출했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조성은 씨는 9월 13일 날 대검과 공수처 외에는 자료 준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검에 9월 3일 날 자료를 냈는데 9월 6일 날 그 고발장 및 증거자료를 입수

했다고 보도가 됐어요.

이것 검찰부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이것 조사 해야지요. 이것은 진상조사가 아니라 검찰조사를 해야지요. 안 하실 거예요?

아니, 9월 14일 날 세계일보에서는 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가 연루된 의혹에 대응하는 자료라면서 내부 문건 공개했어요. 이것 대검 내부자료잖아요. 이것 진상조사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묻는 질문이시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아니,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사건 때도 피의 사실 유출에 대해서 엄단해야 된다 그리고 훈령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자료가 날로 그냥 통째로 나가는 것도 처음 봤어요.

특히 조성은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료 9월 3일 날 냈는데 3일 만에 자료가 통째로 나갔어요. 그렇게 수사 비밀을 강조하시고 피의사실 공표를 엄벌해야 된다고 하시는 장관께서 이것 당연히 진상조사해서 엄벌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학의 사건, 이성운 서울중앙지검 공소장 유출 이것은 그렇게 분노하시면서 피의사실 유출자를 찾는다 그러면서 검찰 지시를 하셨잖아요. 이것은 그것보다 덜 중한 사건입니까? 중한 사건 아니에요, 이것도 똑같이 다? 왜 안 하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살펴보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살펴본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 없는 얘기입니다. 진상조사 지시를 하셔야지요. 최소한 검찰 지시는 아니라도 진상조사를 지시하셔야지,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냥 구령이 담 넘어가듯이 살펴본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것도 지시한 게 없네요.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면 기준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피의사실 공표, 수사자료 유출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강조하시던 분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상 왜 그냥 침묵으로 일관 합니까, 아무런 조치도 없고?

○**법무부장관 박범계** 유상범 위원님 지적처럼 합당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진상조사 지시를 하셔야지요. 이런 식으로 여권에 유리할 때는 분노하시면서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찾아내라면서 검찰 지시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것 명백하게 윤석열 후보를 죽이는 이런 자료

가 3일 만에 유출됐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 안 하고, 그러면 이것 장관이 지시하신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9월 6일자 정계의결서가 뉴스버스에 보도된 것은 적어도 저희 수사기관에서 나간 것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더 엄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뉴스버스 외의 다른 매체에 보도된 고발장의 내용들에 대해서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위반해서 유출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상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장관님, 내가 장관이기 전에 여당 정치인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장관께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지는 알겠지만 본인이……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때 그것은 그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유상범 위원** 본인이 말씀을 적어도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엄단한다는 본인의 가치관적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셨으면…… 이와 같이 말도 안 되게 자료제출한 지 3일 만에 2개의 기관에서 그 자료를 그대로 입수해 가지고 보도하는 정도 되면 이것은 통째로 준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관께서 사실상 승인을 안 했으면 이렇게 나왔겠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과도한 억측이고 상상이십니다.

○**유상범 위원** 제 상상이에요? 그러면 진상조사를 하셔야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유상범 위원** 아니, 살펴본다 그랬지. 진상조사를 하시라고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살펴보는 것이나 진상조사나 뭐……

○**유상범 위원** 아니, 다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러면 진상조사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면 확실하게 하세요. 공식적으로 지시하십시오.

동의하신 겁니까? 공식적으로 지시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알겠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서울 성북갑의 김영배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것에 연장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4월 3일 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한테 보냈던 고발장 그 내용이 3월 달에 대검에서 작성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던 그 문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제가 아까 질의를 했고요.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다면 2개 이상의 검찰조직이, 그러니까 수사정보정책관실 이외에 다른 조직이 관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의 2개 이상의 조직을 동원해서 지시하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검찰총장 이외에 없다고 보는데,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게 하고 그리고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데 고발 사주를 사실상 주도하고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공작을 하는 데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에 주도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수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저희 수사범위에 들어가면 저희가 수사를, 진상규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따라서 지금 포렌식까지 했다고 하니까 손준성 검사가 김웅 의원에게 보낸 게 사실인 것이지요, 처장님? 확인이 된 것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은 수사에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다면 손준성 검사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손준성 검사 선에서 수사가 끝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처장님도 그렇게 끝까지 확인하실 것이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수사대상이 되고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상에 윤석열 총장도 분명히 포함되는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요, 피의자이기도 하니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이 사건에서 가장 의혹의 실체가 되기 때문에 진상

조사를……

○김영배 위원 핵심적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가 규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영배 위원 그렇습니다. 핵심적 의혹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가요, 아까 여쭙봤지만 4월 3일 날 손준성 검사가 오후 4시경에 고발장을 김웅 의원한테 보냈다고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전에 유시민 의원이 MBC 방송에 출연했던 것이 그 고발장에 나온다고 하고 최강욱 의원이 오전에 발언했던 내용도 그 고발장에 나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검찰의 조직적 사찰, 즉 윤석열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조직적 사찰 의혹이 있는데 이것은 별건 사건으로 다뤄야 할 정도의 사건이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단서가 확인된다면 검찰이 윤석열 검찰하에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선거 시기에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조직적으로 정치개입을 했다는 의혹이 확인되는 셈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을 사실상의 별건에 가깝게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다뤄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수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예단하기 어렵고요. 수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확인해야 될 부분 또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 하겠습니다.

○김영배 위원 이게 의혹이 사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이라면 완전히 국기문란사건이고 검찰 쿠데타사건입니다. 검찰이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수사권을 밤을 새서 써도 모자랄 판에 선거 시기에 그것도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정치인의 사찰을 만약에 해서 그것을 고발장을 쓰고 고발장을 정치인한테 고발 사주를 하는 식으로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검찰 쿠데타이고 제가 볼 때는 세계적으로도 이게 유례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명운을 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분만 더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 공수처도 수사기관으로서 당연히 객관적 증거가 가리키는,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실체적 진실을 추구할 것입니다.

○**김영배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발장에 나오는 내용들도 말입니다, 제가 제보받은 바에 의하면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을 거의 의심케 하는 내용들로 표현들이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골수지지자’, ‘극렬하게 지지하는 문제인 정부와 좌파 정권 유지라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짐’ 이런 표현이 등장한다고 제가 제보를 받았는데요. 좌파 정권, 굉장히 정치적 용어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닌데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닌 용어를 이렇게 정치적인 수사를 동원해서 고발장을 작성하고 고발장을 정치인한테 전달해서 사주하는 이런 식의 행태라면 이것은 공직사회에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사건이라고 보거든요.

처장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꼭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가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수사 초기여서 저희가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이 객관적 증거에 의해서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저희가 수사기관으로서 합당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조수진 위원님 그리고 소병철 위원님 순서로 질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주혜 위원** 잠시만요, 제가 늦게 받아서……

○**위원장 박광온** 조수진 위원님 먼저……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조수진 위원** 영상 준비부터 해 주시지요.

영상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경선 TV토론입니다. 여기 보면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손준성 대검 전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엄호한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했던 얘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뭐가 다르지요?

○**조수진 위원** 박범계 장관은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단히 가까운 관계였기 때문에 범죄가 있었을 것이라라고 예단을 했는데 지금 추미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유임을 엄호한 세력이 여당과 청와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장관으로서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자기가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발이 됐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손준성 검사는 검사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뜻이었다 이런 해석도 가능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범계 장관님, 이 정권 법무부장관들은 인수인계 안 합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전현직 장관이. 인수인계 안 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 수사정보정책관으로 부임했는지 여부는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조수진 위원** 그러니까 인수인계를 안 받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러나 그 뒤에……

○**조수진 위원** 자, 박범계 장관의 이 말은 인수인계를 안 받았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게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수진 위원** 박 장관은 지금까지 국회 대정부질문 등에서 범죄를 예단하는 발언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안 되는 것이지요. 특히 법무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뭘 예단을 했지요, 제가?

○**조수진 위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핵심 수사 대상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지금 공수처장도 그렇게 답하지 않습니까?

○**조수진 위원** 전임 총장과 손 검사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고 이렇게까지 발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이야기를 한다면 적어도 증거가 남았어야 돼요. 검찰총장이 고발을 야당에 시켰는데 그 고리가 어떤 검사였더라는 정도까지는 나왔어야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데 법무부장관이라는 분이 대정부질문에서 자기의 느낌대로 몰고 가려는 게 나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것은 조수진 위원님의 논법이고요.

○**조수진 위원**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까

지 밝혀진 것, CG 보여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고발 사주라기보다는 제보 사주예요. 이 얘기를 유인태 전 의원이 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박지원 국정원장이 올 들어서만 최초의 뉴스 제보자라고 하는 분과 세 번을 만났다는 거예요. 2월 14일 날은 무려 5시간을 만납니다. 2월 14일에도 외교·안보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어요.

혹시 CG 준비됐습니까?

위기였고, 바로 이런 일들이 있었던 2월 14일에 공관에서 5시간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 제보자하고는 8월에만 두 번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시내 유명 호텔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그때도 외교·안보에 굉장히 위기가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장관의 이런 발언들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을 한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잘못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조수진 위원 제가 뭘 잘못 보고 있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뭘 단정을 했습니까?

○조수진 위원 장관님, 바로 그런 예단을 하는 듯한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뭘 예단을 했고……

○조수진 위원 야당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잘못 보고 있다’, ‘상상력을 발휘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가 뭘 예단했고 뭘 단정을 했지요?

○조수진 위원 장관님, 1997년 대선 정국 당시에 여당의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을 하지요. 당시 야당 후보였던 김대중 후보가 670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런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총장이 현직 대통령에게 수사는 안 된다…… 왜? 대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검찰총장이 건의를 해요.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 후보의 비자금 문제를 수사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다’.

이 일화하고 지금의 사안은 정확하게 부합이 안 되지요. 왜? 이때는 증거는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무부장관이나 여당 정권 인사들이 몰고 가고 있는 이른바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은 전혀 증거가 나오지 않았어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거는 위원님 생각입니다.

○조수진 위원 그런데도 검찰총장 고발 사주 의혹이라고 몰고 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거는 위원님의 바람이고 위원님의 생각일 뿐입니다.

○조수진 위원 이래서 법무부장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거를 앞두고 객관적 증거 무시하는 것, 이거 안 되는 것이지요? 박 장관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97년 대선 앞두고 DJ 비자금 수사하는 것 안 된다고 한 YS라든지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대답해 보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저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모릅니다.

○조수진 위원 아유, 그것을 모르시면 됩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

○조수진 위원 진짜 모르세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구체적인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조수진 위원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굉장히 존경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담당 기자도 했었습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알고 있습니다.

○조수진 위원 그런데 이런 사안까지 아시는 장관님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렇게 함부로 범죄를 예단하는……

○법무부장관 박범계 잘 모른다고 했지요.

○조수진 위원 그런 언행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 대단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위원님의 바람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의 논법과 제 논법은 다르고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는 것도 편견입니다.

○조수진 위원 저는 예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관님과 논점이 다른 것이지요. 논법이 다른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맞습니다.

○조수진 위원 범죄를 예단하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단하지 않았고요.

○조수진 위원 특히 법무부장관이 그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예단하지 않았고, 이 사건의 실제적인 규명대상이라는 겁니다.

○**조수진 위원**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십시오.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것은 옆에 계시는 공수처장님께서도 그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조수진 위원** 국민들이요 굉장히 현명해요. 장관님이 그렇게 증거도 없이 범죄를 몰아가니까 더 의아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법무부장관 박범계**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민 위원님.

○**박주민 위원** 저는 자료제공 요청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질의는 따로 안 하시지요?

○**박주민 위원** 저는 추가질의 안 하려고요, 추가질의 제가 한다 그러면 야당 위원님들 더 하시고 그러실까 봐.

법무부장관님, 추가로 자료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드리겠습니다.

우선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관련해서 2015년 7월 28일 수원지검 특수부의 분당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사건 중간수사결과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건 관련 공소장 일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판결문에 대해서요 신영수 전 의원 동생인 신 모 씨 판결문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 3월 서울고법 형사4부, 최재형 부장판사가 있었던 부인데요 여기서 제삼자 뇌물취득 혐의로 신 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한 판결문인데요. 이 사건 1심부터 시작해서 최종심까지 판결문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주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공수처장님께 이어서 여쭙보겠습니다.

아까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관련한 수사에 대해서는 3일 만에 이례적으로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원래 사건분석조사담당관을 통해서 공수처의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지금

까지 수사 착수한 것은 20건이 안 넘습니다.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전주혜 위원**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검찰과 경찰에 이첩한 것, 이게 현재까지 1400건 정도예요. 그러니까 공수처가 사건 처리처가 아니라 사건 정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고발은 되자마자 3일 만에 광속도로 그렇게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이런 점을 봤을 때…… 그래도 조성은 씨에 대해서 아까 부인을 안 하시니까, 그런데 공수처가 빨리 협조해 달라고 전화까지 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공수처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수사하는 것 아닌가, 불공정한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을 떨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조성은 씨가 핸드폰을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캡처 사진도 제출을 했지만 핸드폰 원본을 일단 제출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제보 사주 관련해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정원법 위반으로 지금 고발된 것 아니겠어요? 뭐냐 하면 조성은 씨하고 박지원 원장이 만난 것이 8월 11일입니다. 그리고 8월에 한 번 더 만났다는 것이고요. 뉴스버스 보도가 있었던 것이 9월 2일입니다.

그리고 또 조성은 씨가 텔레그램 캡처를 한 것이 8월 11일 전후에 한 3분의 1 정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언론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보 사주의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가는 점이고요.

조성은 씨가 핸드폰 원본을 제출을 했으면 제 생각으로는 그 통화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박지원 원장과 조성은 씨와의 통화내역이 지금 핸드폰이 공수처에 제출이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사를 해 보시는 게 과연 이 사건의 실체가 제보 사주인지 고발 사주인지 밝히는 데 굉장히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맞습니다. 당연히 조사를 합니다.

○**전주혜 위원** 지금 조사를 하고 계세요, 그 부

분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지금은 당사자하고 날짜를 잡았습니다.

○**전주혜 위원** 당사자하고 날짜를 잡아서 그러면 그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말씀을 정확하게 언제인지 드릴 수는 없지만……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8월 11일 그때부터 9월 2, 3일까지, 왜냐하면 조성은 씨가 언론에 나와서 ‘9월 2일은 박지원 원장님이나 내가 원하는 날짜가 아니었다’ 지금 이렇게까지 발언을 해서, 이것은 실언이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조성은 씨와 박지원 원장과의 이런 8월과 9월 사이의 통화내역이 많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은 제보 사주입니다.

지금 그것을 보고 공수처에서는 박지원 원장에 대한 입건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지금 열려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통화내역 그리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이 이 사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데 굉장히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가 있다. 공수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빠른 조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도 유의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일 만에 이렇게 광속도로 그 고발장에 의해서 지금 입건이 된 것처럼 박지원 국정원장의 경우도 여러 가지 그런 정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이것은 너무 형평성을 잃은 수사 아니냐 이런 의심을 거둘 수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PPT 보면서 여쭙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처장님도 저와 같은 판사도 하시고 이랬으니까,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입건 죄명이 4개인데 그중에 마지막이……

1분만 더 주십시오.

마지막이 공직선거법 위반이잖아요.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도 지금 입건이 된 상태입니다. 맞지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압수수색영장에 나와 있는 사실은 고발장이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로 접수되도록 해서 결국은 선거에 부정한 영향을 끼치게 했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뉴스버스의 보도를 보더라도, 조성은 씨의 발언에 의하더라도 이것은 접수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기본적인 것도 조사를 안 하고 공수처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까지 입건을 하나, 지금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세요. 처장님, 접수가 안 됐으면 이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도 지금 이 부분 자세히 보는 것은 처음인데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압수수색영장을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영장을 공개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영장이 의원회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낭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로서는 유감스러운데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혜 위원** 그 과정을 지금 여쭙보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이러한 아주 빈약한 사실로 압수수색영장이 기재가 돼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인을 해 보시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기초적인 부분이 안 돼 있다고 하면 이게 수사에, 더더군다나 불공정한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한번 확인해 주시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주혜 위원** 국정감사 때나 한번 아니면 본 의원실에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위원장님, 혹시 한 1~2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옥 전주혜 위원님께서 또 많은 야당 위원님께서 저희 공수처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 또 저희가 진행하는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제기하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공수처장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스스로도 이 사건 수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공수처의 장래에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을 유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 사건을 보는 시각이 극명하게 다른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냐 제보 사주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대단히 정치적인 사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중립성은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전주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됐나요?

○전주혜 위원 조금만 발언 기회를 주시면……

○위원장 박광온 발언 기회는 다 지나갔는데요. 다른 위원님도……

○전주혜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공수처장이 항상 해명을 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유상범 위원 저희가 현안질의를 하면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 좋은데 그 답변이 끝났는데 그다음에 별도의 시간을 얻어서 전혀 관계없는, 본인이 하고 싶은 해명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거든요.

○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의시간에 답변시간이 포함되면 대체로 위원님들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시기 위해서 국무위원이나 기관의 장들이 답변할 기회를, 시간을 될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아마 소속기관의 장들은 좀 답답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배려하는 거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 그것은 100%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광온 제가 충분히 고려해서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참, 1분 먼저 하신다고요?

○박주민 위원 2분만 쓰겠습니다, 질의.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순서가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려면……

○소병철 위원 먼저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짧게 하신다니까……

○박주민 위원 질의 2분만 짧게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아니, 안 하기로 해 놓고서 조금 전에……

○박주민 위원 듣다 보니까 꼭 하고 싶은 게 생겨 가지고요.

○유상범 위원 그러면 안 되지.

○위원장 박광온 소병철 위원님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짧게 좀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칼처럼 하시네요.

5분 지금 한 것 아닙니다. 다시 주십시오.

장관님, 처장님, 사무처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전남 순천갑 소병철입니다.

법무부장관님, 지금 국기문란, 헌법유린 고발 사주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검찰의 수사를 받겠다’ 이런 발표를 한 적을 언론에서는 못 봤고 ‘국회는 오겠다’ 이런 것은 봤는데, 어떻습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제 기억으로도 그렇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반면에 대장동 의혹사건의 주목을 받는 이재명 지사는 ‘100% 수사받겠다’ 이랬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소병철 위원 참 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윤석열 후보는 평생 검사로 살았던 분인데, 지난 법사위에서 제가 예전 청문회 때 윤석열 후보가 후배한테 책임을 뒤집어씌웠다…… 또 이번에도 국기문란사건에 대해서 검찰조직 전체가 지금 국민들로부터 비판받고 있는데 본인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이것 참 검찰 선배로서 또 같은 검찰 동기로서 후배들이 어떤 마음일까…… 검찰조직 전체는 지금 위기에 처하고 망가질 형편인데 본인은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도 검찰조직에 대해서 아무런 사과나 어떤 마음의 표시를 안 하고 있어요.

장관님, 지금 검찰을 통괄하시는 수장으로서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을 떠나서 말이지요.

○법무부장관 박범계 이 사건이 우리 검찰조직

에 미칠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영향, 그런 측면에서 장관으로서 굉장한 걱정과 여러 염려들이 있습니다.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장관님은 사실 이번에 오셔서, 법사위원으로서 오랫동안 검찰과 부대끼신 게 있었지만 검찰의 수장, 통할하는 수장은 이번이 처음이신데 당연히 그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PPT 좀 잠깐 들어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제가 어떤 큰 그림이 있다, 총장 시절부터 대선 출마하려고 저렇게 고발하고…… 그렇게 했더니 지금 불과 백여칠 만에 대선후보로 뛰쳐나왔어요. 승승장구하고 있어요.

아까 그 동영상 한번 들어 보세요.

(영상자료 상영)

장관님, 한자로 ‘도륙’, 죄송한데요 도륙이 무슨 뜻입니까?

○법무부장관 박범계 차마 그것을 제가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소병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방금 말씀에,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처참한 게 도륙 아닙니까? 본인은 저렇게 도륙 수사를 했다고…… 저나 장관님이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검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이 저런 표현을 했어요. 저분 저렇게 피아를 가리지 않고 말씀한다 해 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지만 저때는 솔직한 심정이었지요.

그러면 본인도 도륙을 당할 각오를 하고 검찰로 뛰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지금 대장동 의혹사건의 이재명 지사는 100% 내가 수사받겠다 그러는데 국회로 오겠다니요. 국회로 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또 지금 본인의 주가 올리겠다는 거예요? 도륙받는 수사를 본인이 자청해야지요, 나를 도륙해 줘라 이렇게.

그게 검찰조직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 아닙니까? 장관님 짧은 기간이지만 지금 검찰을 통할하는 분으로서 애정, 안타까움 이게 있잖아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 만약에 국민과 어떤 관계에서 국민은 죽을 지경이 돼도 본인만 승승장구하는 대선후보, 무서워요. 대한민국 무섭습니다. 철저히 수사를 더 하셔야 돼요, 장관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한홍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법원행정처장님, 변호사 등록을 안 하고 활동을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변호사 등록하지 않은 채 변호사 업무를 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되겠지요.

○윤한홍 위원 처장님도 전원합의체 판결 많이 참여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윤한홍 위원 한 20여 건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전원합의체 판결 참여하면 1심·2심 판결문 보지 않고도 판결 내립니까? 1심·2심 판결문 보지 않고 그냥 판결 내릴 수 있습니까?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반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처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안 보고 합니까? 처장님, 어떠세요? 봅니까 안 봅니까, 1심·2심 판결문?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러니까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는 사건 자체가……

○윤한홍 위원 아니, 그냥 간단하게 대충 대략 일반적으로……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볼 때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습니까? 답을 또 애매하게 가시네.

권순일 전 대법관이 이재명 지사한테 무죄 선고할 때 1심·2심 판결문 읽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본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탁월하신 분인지 직무유기를 한 건지, 왜냐하면 판결 결과가 정해져 있으니까 1심·2심 판결문 안 보고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전원합의체라는 게 뭡니까? 대부분 2심 판결을 뒤집는 고도의 법리 변경을 요할 때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습니까,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고?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런 경우에 어떻게 1심·2심 판결문도 보지 않고, 그 정도로 뛰어나신지 안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지금 현재 권순일 전 대법관이 없으니까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랬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고.

요약보고서만 읽고 판결을 했다 그러면 그 요약보고서가 연구보고서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연구보고서도 사실상 경력이 10년 이상 된 판사들인 재판연구관들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이미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이 연구보고서를 지금도 제출할 수 없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가능한지 아닌지만 말씀해 주세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게 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유가 그 속에 권순일 전 대법관의 거짓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왜? 화천대유 부분을 못 봤다고 했는데 못 봤다고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1심·2심 판결문을 안 봤다고 그러고, 그러면 연구보고서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연구보고서는 못 주겠다, 이미 판결이 끝난 지 한참 됐는데……

그러면 결국은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화천대유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다가 보니까 안 맞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권순일 전 대법관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아요. 대장동 사업은 전혀 몰랐고 관련 자문을 한 적도 없다고 본인은 이야기했는데 화천대유의 이 모 대표는 그랬어요,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셨다. 서초동 사무실에 나와 열심히 일한 것을 직원들이 모두 안다. 연봉 2억 그 정도 일했다’.

이 모 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권 전 대법관은 대장동 사업은 전혀 몰랐고 관련 자문도 한 적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화자문 정도만 했다. 대장동 자문한 적 없다’ 이렇게 말도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돈도 많이 받았거든요. 별로한 일 없이 돈 많이 받았다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전부 이게 지금 말이 안 맞는 겁니다. 말이 안 맞는 거짓말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본인이 불안해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 밝힌 것은, 변호사 등록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언론 기사를 보신 거지요? 확인하셨지요?

○**법원행정처장 김상환**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변호사법 위반이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대법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신뢰를 회복하려면 연구보고서를 제출해라…… 그래서 권순일 전 대법관이 많은, 화천대유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단 하나라도 진실이 밝혀지기를 제가 기대하면서 자료요구를 한 겁니다.

국민들 편에 서서 자료제출 요구를 다시 합니다. 자료를 주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공수처장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매체에 제보를 하고, 각종 말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지요, 이 사람도. 조성은 제보자라고 합니까? 이 사람 출국금지 검토하고 있습니까,

공수처장님, 검토하고 있습니까 안 합니까?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저희도 검토할 시점이 되면 검토를 합니다.

○**윤한홍 위원** 시점이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미국 간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페이스북하고 인터넷뉴스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또 수사 끝날 때까지 안 나간다는 말도 하고 그래서 저희도 헛갈립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딱 판박이 아닙니까. 옛날에 장자연 사건 때 윤지오, 민주당 중진위원이 공익신고자라고 의인으로 띄워 주고 후원금까지 받아 가지고 사법기관들이 다 도와줬다가 돌연 캐나다로 출국했는데 아직 소환도 안 하고 수사를 안 하잖아요. 결국 다 거짓말인 게 나중에 나왔잖아요.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인터넷매체에다 고발 사주 의혹, 국정원장이 했던 게 진실이라면 지금 출국금지시켜 봐야 되는 거예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진욱** 그 부분은 유의해서 저희가……

○**윤한홍 위원** 그래야 당당한 겁니다.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출국금지시켜서 조사하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당당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야 간사 간 협의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재보충질의 3분씩만 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들끼리 다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윤한홍 위원 한 두 사람만 3분 주십시오.

○박주민 위원 간사님, 저도 못 하게 하시더니……

○윤한홍 위원 두 사람만 주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박주민 위원 원래 4 대 4로 하기로 했는데 저희 2명만 한 거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회의가 지금 늦어지고 하니까…… 지금 여당 위원들은 두 분밖에 안 했어요, 거기는 다 하시고.

○윤한홍 위원 우리는 4명 앉아 있는데……

○위원장 박광온 마찬가지로,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시는데 안 했지 않습니까?

○조수진 위원 그것은 안 한다고 하셨잖아요.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간사들 합의한 대로 진행하시지요.

(「합의한 대로 하시지요」 하는 위원 있음)

○조수진 위원 3분씩 2명이잖아요.

○윤한홍 위원 두 사람만 주세요, 두 사람만. 저는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렇게 합시다. 합의한 대로 합시다.

○송기현 위원 합의한 대로 해 주세요, 합의한 대로. 그러면 합의의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도 안 하잖아요.

○송기현 위원 합의한 대로 해야 잘 진행이 된다고요.

○조수진 위원 보충질의만 합의를 했어요.

○송기현 위원 합의를 한 다음에 합의대로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행을 할 때.

○위원장 박광온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한 사람만이라도 주세요. 우리 조수진 위원님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두 분이 얘기하세요. 간사님……

○박주민 위원 그러면 저희 안 했던 2명하고 한 사람 해서 세 사람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저기 하고 한 사람 주세요. 한 사람씩만 주세요.

○송기현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합의가 의미 없잖아요. 앞으로 회의를 여러 번 해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처음부터 합의를 하시고……

○조수진 위원 3분씩 2명이면 5분밖에 안 되는

데요.

○송기현 위원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합의가 의미 없어진다고요.

○윤한홍 위원 저는 5분, 3분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5분으로 자르니까……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합의가 의미 없어지잖아요, 회의가 합의를 하는 건데.

○윤한홍 위원 아니, 3분만 주세요. 저는 5분, 3분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수진 위원 한 분만 3분 주세요. 그 정도 아량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박광온 아니요, 그러면 제가 이 회의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게 되니까 대단히…… 저 진짜 조수진 위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간사님도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시니까.

○윤한홍 위원 저는 오해가 좀 있었네요. 5분, 3분 그렇게 저는 생각했는데……

○위원장 박광온 그런데 제가 다음에 발언 기회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님,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님, 박종문 헌법재판소사무처장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님 그리고 박재민 국방부차관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뜨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위원회에서 회부한 법률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사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찾아온 법사위원회의 전통을 존중하고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국회법 개정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법사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하자는 그런 다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장님들이 출석하시는 회의에 의결할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먼저 의결하고 오늘과 같이 상황이 허락될 때 간사님들과 협의를 통해 현안질의를 실시해서 법사위원으로서 위원님들의 발언과 활동을 최대한 그리고 효율적으로 보장하는 법사위원회 전통을 존중하려고 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동안 체계·자구 심사와 관련해서 월권한다는 일부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개정 국회법의 취지를 잘 살려서 위원회를 새롭게 운영해야 한다는 국민과의 약속도 지켜 나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대로 지난 9월 14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회법은 체계·자구 심사기간을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원회는 체계와 자구의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내용은 여야가 합의한 것입니다.

또한 당시 여야 원내대표는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체계·자구 심사 때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현안질의를 삼갈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법사위원회 운영 원칙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은 개정 국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오늘부터 소관기관의 차관님들이 출석하실 수 있도록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여야 간사님들께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제가 밤늦게 원내수석에게 두 당의 원내수석 간에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법사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원내수석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연락받고 제가 이런 절차를 진행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체계·자구를 심사하실 때 국회법 개정취지와 여야 원내대표단 간의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계·자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97항과 98항은 잠시 후 다른 행안위원회 소관 법률안과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9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17시32분)

○위원장 박광온 먼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99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 분원인 국회세종지사당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안 제22조의4를 신

설하여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으로 세종지사당을 두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더불어 부대의견으로 국회사무처는 2021년 국회세종지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지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계획 수립 시 국회 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국회법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복 국회사무처 사무차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9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복 사무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 100.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39)

## 101.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보위원장 제출)

(17시34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정보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정보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보활동기본지침을 개정하였을 경우 이를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려는 내용이고 의사일정 제101항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국가정보원 퇴직직원의 취업 지원, 창업 지원 및 경력개발 등의 지

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보원 직원의 성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두 개정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0항과 제101항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법률안과 관계없는 것, 국정원과 관련된 것 하나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현안질의를……

○윤한홍 위원 아니, 현안질의는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만 하려고요.

○위원장 박광온 하여튼 간사님, 그 원칙을 충분히 잘 지켜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기조실장이신가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예,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국정원이 사실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국정원법에 명시돼 있는 거지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국정원이 정치개입하면 그것은 바로 즉시 불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 해당 법안을 자세히 읽어 보시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관여해서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사실 어느 정부든지 간에 국정원이 정치중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의 이슈인데, 최근에 국정원장이 국내 정치에 개입한 흔적이 군데 군데 나타났단 말이에요.

사실상 제보자가 ‘9월 2일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날짜는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하고 롯데호텔에서 여러 번 만나면서……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윤한홍 위원 이것 확인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부직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제 직무는 그와 관련된 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내부직원들 분위기나 이런 게…… 왜냐하면 국정원장이 지금 정치개입을 하고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원장님께서 정치개입을 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러면 국정원장이 지금 안가로 쓴다는 게, 롯데호텔이 밝혀졌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것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이미 다 나온 것을 확인 안 해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기조실장으로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간사님……

○윤한홍 위원 그래서 사실 차관을 오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면 기조실장보다는 차장이 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광온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국회법을 개정할 때 체계·자구 심사를 하면서 현안질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신사협정이 있는 겁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광온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윤한홍 위원 아니, 차관이라 하더라도…… 국정원도 1차장, 2차장이 있지 않아요?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국회 업무는 차관급인 기조실장의 일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잠깐 계세요, 기조실장님 잠깐 계시고.

○윤한홍 위원 기조실장은 차관급이라고 해도 차관은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위원장 박광온 그러니까 지금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벗어나는 심사를 하지 않는다, 이게 법에 정해져 있다니까요.

○**윤한홍 위원** 아니,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오늘 차관을 불렀지 않습니까, 위원장께서?

○**위원장 박광온** 예.

○**윤한홍 위원** 그러면 국정원도 최소한 차장인 1차장, 2차장이 와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광온** 그 관계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제가 차관입니다. 정무직 차관으로 국정원법에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정무직 차관급이지요. 차관은 아니잖아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아닙니다, 차관입니다. 급이 아닙니다.

○**윤한홍 위원** 기획조정실장이 차관입니까?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과거에 1급 별정직이었는데 차관급 대우를 하였습니다만 금년도 1월 1일 이후로 정무직 차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래요?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박선원** 그렇습니다.

○**윤한홍 위원** 하여튼 그것은 확인해 주세요.

○**위원장 박광온**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확인해서 간사님께 제공해 드리기 바랍니다.

박선원 기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 102.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 위원장 제출)

(17시38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2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7월 22일 심사하는 과정에서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적정범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 계류했습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제1차관 출석하셨는데 그동안 추가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억원 차관 말씀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추가적으로 논의된 것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법사위에서 다시 한번 전체회의에서 논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겠다고 그렇게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전주혜 위원** 오늘 타위법 체계·자구 심사 관련해서는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온 게 아니라 모든 부처가 다 차관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난 8월 양당 원내대표 합의 시에 체계·자구 심사 시에는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안내공문을 각 부처에 보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러한 합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합의를 했다고 하면 그것은 법사위의 위상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합의문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합의문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요.

그날 본 위원이 원내대변인으로서 여러 차례 국회의장실 양당 지도부 회동에 참석을 좀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내지도부에 확인한 바로는 원래는 장관이 원칙적으로 출석을 해야 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차관이 하는 것을 양해할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국민의힘 위원들에게 아무런 의견도 사전에 물어보시지 않고 오늘 이렇게 모든 부처의 차관이 출석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타위법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는 장관이 출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견이 없는 법안밖에 없달지 아니면 장관이 못 올 상황이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차관이 올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신축성 있는 진행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관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양당 간의 합의는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전주혜 위원님도 대변인이셔서 아마 관계를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당의 최고위원이기 때문에 이 당시에 다시피 민주당 같은 경우도 의원총회를 몇 번이

나 열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기억으로 처음에 원내지도부 포함해서 국회의장님과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대로 기 합의문을 쓴 내용 이외에 두 가지가 더 합의가 됐었는데 그중에서 특히나 법사위 기능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체계·자구 심사를 넘어서서 본인들의 고유법 아닌 타 상임위에 관련되어서 사실상 상원의 역할을 하는 갑질에 가까운 그런 행위들이 많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그동안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명문화시킨 것은 법으로 체계·자구 심사 이외에는 하지 못 한다 이렇게 명문화를 시키고 동시에 타위법은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명문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마 그 당시에 김기현 대표께서 ‘구두로 합의를 하자, 구두합의도 합의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를 받고 최고위원회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아까 박주민 간사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국회운영위 때 윤호중 운영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언론보도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확인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 생각은 정치적 합의가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말로 하든 글로 쓰든 사실은 정치가 말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약속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우리가 지켜 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장관이 나오면 더 좋겠다 싶은 때도 있을 테고 앞으로 우리가 법사위 개혁을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논의를 해 왔고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하느냐에 대한 논란도 당 내에서도 저희들도 많았고 아마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논란이 있었고요.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문제가 21대 국회 들어서 어찌 보면 가장 큰 개혁과제로 여야가 합의하고 시행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약속대로 지켜 나가고 또 우리가 서로 지키자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지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말씀대로 꼭 필요한 자료 요청이라든지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차관이, 이 자리에 안 나오더라도 다음번에 다른 방식으로라도 물어볼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또 논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저는 개혁을 위해서 만든 기 합의안은 우리가 지켜 나가도록 하는 게, 합의정신을 살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사실은 타위법 심사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현상을 우리 야당에게 자꾸 몰아붙이는데 그렇지 않아요. 체계·자구 심사도 말씀드리면 여당부터 출선수범 하셔야 돼요. 여당은 필요하면 얼마든지 내용을 심사하고 질책하면서 야당이 이야기하면 체계·자구 심사만 해라…… 지금까지 계속 그래 왔습니다. 여기서도 내로남불입니까?

거기다가 명문으로 합의가 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뉘앙스가 여당 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간사와 협의할 때 법률안이 과급효과가 큰 것이 있다, 법률이 타 부처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 있고 다른 법률에도 영향을 주는 게 있다, 그런 경우에는 장관이 와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단순한 법률이면 차관을 부르자. 좀 귀찮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논하자고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무시하고 전부 차관이 와서……

그러면 소위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소위에서 차관 불러서 실무적으로 의논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일률적으로 장관이다, 차관이다가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법률 개정안이 중요한 게 있고 경미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융통성을 가지자 한 것이고.

체계·자구 심사도 여당은 매번 그러시잖아요. 본인들이 할 때는 괜찮고 야당이 하면 체계·자구 심사만 하라고 밀어붙이고.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법입니까? 이것을 위원장님께서 좀 더 현명하게 사려 깊게 판단해 주셔야 되고.

거기다가 현안질의도 체계·자구만 하라고 그러는 게,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장관이 오면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차관이 오면 궁금한 게 있어도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 소위 하고 말지 여기 뭐 하려고 이 자료가 올라옵니까?

너무 그렇게 일방적으로 칼로 무 자르듯이는 안 된다, 위원장님께서 사려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말씀 충분히 제가 접

수하고요. 법에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 사실 주가 차관 출석인데 그 원칙, 지금 윤한홍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법이 개정돼서 법사위원회 운영을 여태까지 해 오던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정착시켜 나가는 첫 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정착시켜 나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 안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여야 원내대표단 안에서도 국회를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게 운영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기준에 맞춰서 얼마든지 제대로 개선해 나가고 보완해 나갈 부분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답이 어느 정도 충분하지는 않더라도 답이 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의사일정 제102항 제가 일단 낭독을 했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는지요.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안 나오셨는데요. 차관이 나오니까 이렇게 진행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어서 참 답답하고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이 법이 위헌적인 법이라는, 이 세무사법이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상정된 법이 20대에도 똑같이 법사위에 상정됐다가 결국은 통과를 못 하고 폐기가 됐던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변호사에게는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허용하지 않는 세무사법 개정안이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대해서 작년 2월 26일 법원행정처가 회신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다시 발생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법안이 수정안이 상정된 이유는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사에게는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평등의 원칙을 반한다’ 이러한 결정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중에서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똑같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 위헌이라는, 지금 위헌

성이 높다 이러한 판단입니다.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세무사 직업수행을 위한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업무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제외할 경우에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수행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다. 또한 같은 세무사자격을 보유한 다른 자격사에 비해서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서만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를 제한할 경우에는 평등권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 또 보다 고도의 회계·세무적 지식이 필요한 세무조정과 불복은 허용하면서 그 기초가 되는 업무는 제외하는 것은 모순이 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의를 거쳐 신중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미 작년에 법원행정처에서 이렇게 회신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사분들의 여러 가지 요청에 따라서 이런 위헌적인 법이 다시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다, 이것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것이고요. 제가 여러 차례 요청드리지만 이것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무사 편을 든다, 변호사 편을 든다 이것이 아니라 법사위 그리고 국회의 본질적인 역할은 제대로 된 법률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요. 위헌성을 알면서도 그것을 그냥 눈감아버린다? 이것은 국회의 임무를 결국은 직무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위헌성이 있는…… 장부와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제외한 나머지의 업무만 변호사들에게 하라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소위로 회부를 해서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치고, 또한 세무사 업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아무런 조사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해 봐야 된다고 그런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또 바로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도 아니고 변호사들의 경우에는 실무교육을 거쳐서 하는 이러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성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은 저는 적극적인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2소위로 회부해서 심층 있는 논의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다른 위원님들 토론해……

김용민 위원님.

○**김용민 위원** 차관님, 저도 지난번 회의 때 같은 취지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을 못 주셔서 가지고 그게 좀 궁금했었어요.

지금 세무사 직무에서 빠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변호사들이 못 하는 것들. 이 업무가 세무사 직업에 있어서 본질적인 부분이나 아니냐에 대한 의견을 달라라고 그때 요청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게 본질적인 것이라고 판단하는지 본질적이지 아니라고 판단하는지, 아니라고 판단하면 위헌 시비가 줄어들어서 통과해도 되는 문제겠지만 본질적인 영역이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위헌성이 남아 있는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을 달라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

오늘 오셔서 그냥 전체회의에 계류됐다고만 말씀하시고 논의사항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좀 아쉽다라는 말씀드리면서 혹시 준비된 게 따로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말씀 주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기재위에서 논의할 때 그런 부분들이 다 고려가 됐고요. 예를 들면 세무사회라든지 대한변호사협회 또 헌법전문가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여러 관계부처 의견도 조화를 한 후에 기재위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야 위원님들이 함께 의결까지 하셔서 그런 것들을 결정하셔서……

○**김용민 위원** 논의과정을 여쭙보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이 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게 본질적인 게 아닌 영역이다,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인 게 아니고 부수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한해도 된다는 입장인 건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기재부의 입장을 저는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재부가 여기에 대한 입장과 답을 주셔야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속기록도 봤는데요. 저희 부총리께서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의 결정취지에 부합한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고 그게 저희 입장을 갈음할 수 있는……

○**김용민 위원** 현재는 모든 업무를 다 주는 게 아니어도 된다는 입장만 얘기한 것이지 어떤 것은 빼고 어떤 것은 넣어라라는 현재 입장은 아니었어요. 어떤 것을 넣고 빼는 것은 결국에는 입법재량의 영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빼 버리면, 예를 들어 변호사 업무를 하는데 법

정에서 변론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면 변호사 업무의 본질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인 영역이나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궁극적으로는 이게 결국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민 위원** 차관님 입장이 없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의 정리된 입장이 지금 없으신 것 같아서 답변……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까. 저는 문제 제기하는 정도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수진 위원님.

○**이수진 위원** 지금 세무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게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렇지요. 현재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을 부여받았는데 등록을 불허함으로써 아예……

○**이수진 위원** 잠깐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등록을 불허함으로써 아예 전반적으로 업무 자체를 제한하는 것 그 자체가 위헌이다……

○**이수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무자격 보유라는 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말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아닙니다.

○**이수진 위원**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아니라 예전에 자동적으로 부여됐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맞습니다. 자격을 부여하는데 세무사는 자기가 시험을 봐서 부여가 되는 거고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자격을 취득했으면 자동적으로 이 세무사법에서 부여를 했는데……

○**이수진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이면서 세무사시험도 합격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데, 그렇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렇습니다.

○**이수진 위원** 그런데 옛날에 자동적으로 부여됐던 자격에 대해서만 이것을 지금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두 가지, 장부작성 대행, 성실신고 확인업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이수진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아까 김용민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지만 이게 정말

세무사들한테, 이 업무를 변호사들이 하게 되면 세무사들이 어떤 생존의 위협을 받거나 그럴 정도의 업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세무사의 생존의 위협 이런 것보다도 결국은 이 취지에 맞췄을 때 세무사자격이 부여된 변호사한테 어느 업무까지 허용하는 것들이 과연 여러 가지 제반요소들을 봤을 때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냐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수진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은 박주민 간사님, 윤 간사님, 잠깐만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간사님들 잠깐 협의하는 동안에 토론하시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유상범 위원입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유상범 위원 법적으로 변호사가 세무사자격을 취득했는데 과거에는 세무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등록을 못 하게 만드는 형태로 갔다는 것은 세무사 업무를 원천 방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 이렇게 했고,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여지를 뒀지요. 모든 업무를 허용할지 여부는 입법적으로 판단해라 이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세무사자격을 부여했는데 세무사의 업무 중에 본질적인 권한을 못 하게 하면 결국 그것은 사실상 세무사를 하지 말라는 과거의 규정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위헌 문제가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본질적이나 아니냐에 관한 검토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세무사 업무가 거의 99%가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 확인업무 아닌가요? 대부분의 세무사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고 세무사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이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8개의 업무가 있는 데요.

○유상범 위원 8개의 업무가 있지요, 물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중에서 제가 통계를 보니까 이 2개의 업무가 한 57% 정도……

○유상범 위원 그러면 사실 이 업무가 세무사

업무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업무라는 게 되는데 그러면 헌법에서 말한 일반적인 금지행위가 위헌이라고 한, 이미 판단을 한 상황에서 다시 본질적인 행위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것은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헌 판정의 근거가 되는 내용과 이 개정된 내용이 그 효과에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위헌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같은 취지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세무대리를 위한 필요성과 능력 정도, 업무도 있고 전문성과 능력 정도 이런 것도 같이 보라고 했고 그다음에 세무사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직역 간 이해관계,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서 입법적으로 판단할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시각이 있지만 종합적으로 결국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 것인지 그게 판단사항이고요. 기재위에서도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당연히 충분히 고려가 됐고 그 종합적인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는 게……

○유상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권한은 주고…… 본질적인 권한을 뺏아 버리고 마치 헌법불합치를 해소했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얘기도 변호사가 세무사의 그와 같은 업무를 할 수 있을 교육을 받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기본자질을 만들고 나서 이 업무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로 봐야 되거든요. 자꾸 본질적인 업무를 빼 버리면 곤란하다는 거지요.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위헌 판정을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거기에 맞는 것이지. 거기 보니까 나머지 교육규정 그런 것은 다 집어넣었는데 중요한 본질적 업무는 못 한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결국 사실상 세무사 등록을 못 하게 만들었던 전 규정과 이 규정과 차이가 없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8개 업무를 완전히 다 배제했는데 그중에서 2개 업무만 다시 배제한다, 그러니까 그 형량을 어디까지 봐야 될지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상범 위원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비본질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서 비본질적인 부분 중에서 꼭 세무사가 하고 이것은 변호사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는 것은 논리적 설명이 되는데 본질적인 부분을 딱 막아 버리고 사실상 위헌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하기에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설득력이 없어지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런데 회계업무를 제외하더라도 변호사가 세무조정을 포함한 다른 나머지 세무대리업무 이런 것들 수행이 가능한 부분도 좀 있고요.

사실은 7월 달에 헌재가 또 하나의 판결을 내렸지 않습니까? 변호사한테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폐지하는 세무사법 조항 이것도 합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부분도 있어서 다양한 측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종합적으로 고려할 거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세무사자격을 부여한 변호사에게 본질적인 업무를 못 하게 하면서 마치 과거의 위헌성을 해소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 규정이 없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거지요, 57%의 업무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어떤 요건을, 말씀대로 자질을 갖춘 요건을 구비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그것을 해소를 하는 방안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못 하게 만들면 법적인 위헌성 문제가 그대로 잔존할 수밖에 없다 이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약간 참고가 될지 모르겠지만 7월에 헌법재판소가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이 자체까지 폐지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할 때 실무교육을 추가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안도 있지만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입법목적 달성에 불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은..... 의견이 있지만 지금 본질적인 부분을 금지시킴으로써 사실상 과거의 법률과 차이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범위를 열어 주면서 실무교육에 대한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하는 형태로 가도 결국, 그렇게 가는 것이 위헌성 결정에 대해서 더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냐 이거지요.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차관님, 업무가 바쁘시겠지만 오늘 너무 성의 없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지금 이 법에 대해서는 세무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변호사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굉장히 이것은 이 두 단체들이 엄청난 이해관계, 관심이 있는 상황인 만큼 저번에 요청한 그 정도의 답변은 준비를 해 오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너무 성의 없게 말씀을 하시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오늘 이 법안을 표결 처리나 아니면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2003년까지는 변호사자격을 가지면 무조건 세무사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변호사자격을 가지더라도 세무대리업무에 지장이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또 2018년 이후는 아예 변호사자격이 있다고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결국은 2004년에서 2017년까지 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고 또 그분들이 다 세무사로 이렇게 등록한 게 아닙니다.

세무대리를 하려면 일단 세무사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지금 막혀 있지요.

○전주혜 위원 2004년에서 2017년까지 취득하셨던 변호사분들은.....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막혀 있습니다, 지금.

○전주혜 위원 그래서 이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그래서 법을 개정해서 그분들한테 조금 기회를 주자 이게 취지고요.

○전주혜 위원 그래서 세무대리업무를 하게 하는 길을 열어 주자 지금 그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자격증을 딴 사람들은 어차피 세무대리를 못 해요, 왜냐하면 세무사자격증을 지금 따야만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지금 그런 문제거든요.

이게 그냥 세무대리를 이렇게 허용한다고 해서 무작정 세무대리업무를 하는 변호사 수가 계속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예.

○전주혜 위원 기존에 2004년에서 2017년 사이에 취득한 그분들의 세무대리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대한 법안 아니겠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은 평등권에 오히려 굉장히 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차관님 말씀으로도 57% 정도의 업무라고 하면 이게 다 해서 지금 8호까지 있는 업무 중에 2개가 차지하는 게 57%라고 하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형해화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정을 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 차포 떼고 그냥 해라 지금 이 얘기에요, 이 세무사법 오늘 상정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위헌적인 성격, 당연히 이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을 지금 다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 법안을 통과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재고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위원님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를 취득하신 분들이 지금 세무대리업무를 하시려고 해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2019년까지 법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국회, 21대 국회까지 계속해서 법들이 기재위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서 법사위까지 와서 빨리해 주십사, 그래서 입법 공백을 막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한테도 좋고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도 좋고 2004년부터 2017년까지 변호사를 취득하신 그런 분들한테도 좋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본질적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 과연 그러면 이런 회계업무의 전문성, 장부작성이나 성실신고 확인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서 보다 더 회계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자격을 취득했다는 그것만을 가지고 변호사들한테 그것을 부여하는 것들이 과연 맞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갑론을박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기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검토를

해서 이렇게 온 거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서는 좀 빨리 이런 부분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잠시 저하고 윤한홍 간사님이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사실 윤한홍 간사님이나 저나 이 법이 통과돼야 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오늘 이 법안을 안전으로 상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이 법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가 본질적인 부분이나 부수적인 부분이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지 않다, 그에 따라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둘러싸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전체회의에 계류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확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이 의견에……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간사님들께서 말씀하셨다니까 저도 추가 말씀을 하는데 변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부처는 법무부거든요. 법무부하고 기재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좀 되셨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기재위에서 논의할 때 기재위에서……

○송기현 위원 아니, 부처 간에. 기재위에서 논의해서 의견 듣는 거 말고 정부부처 사이에, 법무부와 기재부 사이에 이 부분에 관해서 금방 위원들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세무사 업무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 그 정도는 제한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쪽의 의견이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

간사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번 더 계류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쪽에서도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부분에 관련된 정부의 의견을 분명히 가지고 다음에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덕원 그 부분도 그때 기재위에서 논의가 됐고요. 기재위에서 법제처 의견까지 다 해서 그것까지 다 들어 보시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그런 법안들을……

○송기현 위원 법무부에서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변호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가 법무부거든요.

요. 변호사의 업무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가를 관장하는 원래의 부처는 기재부가 아니라 법무부라는 말이에요, 세무사 업무는 기재부가 하지만. 변호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는 법무부에서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법무부가 결정을 한다기보다 법무부가 기재위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내는 거고요.

○송기현 위원 그러니까 법무부하고 협의를 하시라 이런 얘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기재위에서 입법적으로 최종적으로 그것까지 다 고려해서서 입법적인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송기현 위원 다음에 올 때는 법무부도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가지고 같이 오시라는 얘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법무부 의견은 어떤지를 가지고 오시라고요, 다음에 오실 때.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누가 먼저 하실……

김종민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먼저 하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광온 먼저 하십시오

○소병철 위원 사실 이 법 관련해서 양 협회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올라온 개정안에 대해서 변협에서도 회계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은 변호사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회계에 대한 업무범위를 열어 주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협도 개정안을 제출하는 부분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개정안이라는 것은 변호사들이 소정의 회계업무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 그때는 이 업무에 대한 영역을 열어 주는 것……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로스쿨에서 회계과목을 이수하고 또 선택과목으로 회계과목 시험을 본다든지 등등.

이 차관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기재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다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셨다고 하지만 사실 지금 의원실에, 법사위 의원실에 양 협회가 부지런히 다 다니고 있어요. 어느 한쪽 말씀을 채택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왕 오늘 간사님들께서 전체회의에서 한 번 더 검토를 한다고 하니까 혹시…… 지금 밖에 보니까 변협 회장님도 와 계시고 세무사 회장님도

와 계시더라고요. 지금 변협도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고 어떤 절충적인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교육시스템 같은 것들을 지금 부지런히 갖추고 있더라고요.

제일 바람직하기는 양 협회가 합리적인 절충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 차관님께서도 한 번 더 시간 있으니까 양 협회에서 합리적인 절충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권고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한번 노력해 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억원 예.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이 세무사법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9월 15일 자 조세신문, 세정신문 이런 기사를 보면 윤호중 원내대표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가 한 달, 한 달 하면서 계속 미뤄 오고 있다. 이미 몇 달째 한 달만 미뤄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또 한 달 미뤄 달라고 한다’면서 법사위 야당 간사를 비난을 했어요, 세무사들 만나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이런 기사가 떠 있습니다, 인터넷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여당 위원님들은…… 민주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 처리하는 데 법사위 야당 간사가 방해를 해서 처리를 못 하고 있다고 세무사들 만난 자리에서 비난을 했어요. 오늘 이것 보십시오. 이게 제가 비난받을 자리입니까? 받을 법이에요? 정말 법사위에 우리 야당이 숫자가 모자라서 여러분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도대체 어떻게, 민주당 지도부와 법사위 여당 위원님들과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정을 박주민 간사하고 의논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려고 제가 온 거예요.

오히려 지금 여당 위원님들이 전부 반대하시잖아요. 근데 왜 원내대표는 법사위 야당 간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직전 법사위원장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님, 현명하게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에서도 세무사회에 가서서 반드시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김종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이 법이 21대 국회에 들어온 법이 아니고 20대 국회 때도 제가 법사위에서 이 논쟁을 계속했던 기억이 납니다. 세무사법만이 아니라 각 업역별로 협회와 변호사협회 간의 이런 쟁점법안이 법사위에 되게 많아요.

저는 왜 우리 대한민국은 변호사에게 이런 업무가 이렇게 많이 주어지나, 변호사 하는 분들은 다 바쁜데 왜 이렇게 일을 많이 주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사회가 약간 미분화돼 있을 때 그래도 변호사라고 하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공인돼 있고 법을 다루니까 거의 대부분 일을 다룰 수 있는 이런 제너럴한 그런 성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을 해 보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되게 많이 분화가 돼 있어요, 직업의 종류도 한 2000개에서 지금 한 3만 개 정도로 늘어났고. 그래서 사실은 분화된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서 각 분화된 업역별로 권한이 분리가 되고 각자 맡은 일은 각자 따로따로 전문화돼서 하는 게 바람직한 시대가 됐다고 저는 보는데.

전체적으로 변호사협회와 변호사의 업무와 다른 업역과의 분쟁에서는 가능한 한 변호사의 본질적인 원래의 업무가 아니면 분할시키는 쪽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리고 사회변화에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 보면 변호사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 법사위에. 심지어 박지원 의원은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올 때 어떤 문제까지 제기를 했냐면 법사위에 변호사 숫자를 과반수를 못 하게 하는 법을 제정해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고 나면 항상 법사위가 욕을 먹습니다, 변호사들이 많아 가지고 통과가 안 된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논쟁을 계속하시는데 그 논쟁은 20대부터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협회 간의 업무분장에 대한 큰 줄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세계 한번 2소위

가서 물어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다음번 회의 때는 결론을 짓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변호사로 계시는 분들이다들 훌륭한 분들인데 쓸데없는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법사위의 이런 논의로 법사위 권위가 떨어지거나 하는 이런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있어요, 이런 문제들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명분이 확실하다면 저는 끝까지 논쟁을 하는 것 찬성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이것은 도저히 변호사의 기본적인 업무를 침해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사회변화에 맞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분야는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는 쪽으로, 큰 사회변화를 우리가 수용하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지라도 다음번에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현 위원 20대하고 연결돼 가지고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한번 마무리를, 더 이상……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예,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기현 위원 제가 차관님한테 다른 부처의 의견도 들어 보라고 했던 것은…… 20대에 진행됐던 것과 지금은 좀 다른데 20대 국회에서는 애초에 정부 법안이 나와 있었습니다. 정부안이 나와 있었는데 그때는 정부 법안보다도 조금 더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하는 쪽으로 기재위에서 결정이 돼서 올라왔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정부안이 없이 기재위에서 논의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정부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법무부하고 기재부하고 논의가 돼서 정부 입장이 정해져야 되겠다.

사실 세무사들도 잘 알겠지만, 변호사들도 잘 알겠지만 20대에 제가 간사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똑같은 법을.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이 일단 정부 의견이 결정된 상태에서, 논의가 된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정부 입장을 존중해 가지고 통과시키자고 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 21대에서는 그런 정도 노력이 아직 안 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법리적인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을 말씀드리면 다 아시겠지만 변호사법에는 일단 모든 법률 업무를

변호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관님께서 이 두 가지 말고도 다른 것에서도 변호사가 할 수 있는데 못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세무사법으로 정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들이 다 그냥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문제되는 것 빼고 나머지는 변호사가 고유의 법률 업무로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변호사로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용민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두 가지가 만약에 세무사 업무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또 하나의 문제는 이것이 법률적인 업무라고 한다고 하면 변호사가 변호사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고 할 수 있게 되는 법률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의견을 정해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말씀하시는 2개, 2호하고 3호인가요? 2개 업무가 변호사법에서 얘기하는 법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변호사법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일에 그 두 가지 업무가 법률 업무에 해당된다고 하면 이것을 제한시키려고 그러면 변호사법도 고쳐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이것을 우리 기재부나 이쪽에서 정리하셔야 되고.

단순히 이게 변호사이기 때문에, 법률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변호사법에 정하고 있는 변호사의 업무하고 세무사법에 정하고 있는 세무사의 업무하고 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저나 소병철 위원도 마찬가지고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이런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가 되고 난 다음에야 법사위에서 통과를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지 법률적인 쟁점이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변호사법과 세무사법의 어떤 해석이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될 의무는 사실은 정부 쪽에서 먼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부 쪽 의견을 분명히 정해 주셔야 정부 쪽 의견이 정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꼭 정부 쪽에서 의견을 가져오셔서 우리가 정부 쪽의 최종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가

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쪽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단순히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역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분명히 변호사법과 세무사법 사이에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여기 위원님들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해도 변호사가 저것을 해 가지고 다 한 것은 아니고……

저도 사실은 20대에,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 법 통과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했던 것? 그 당시 야당 간사님이 김도읍 의원님이었고 김도읍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변호사였습니다. 두 변호사 출신들이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또 하실……

김영배 위원님 손 드신 것 아니지요?

아까 우리 윤한홍 간사님 또 박주민 간사님 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어요. 유상범 위원님, 전주혜 위원님, 김용민 위원님, 김종민 위원님, 송기현 위원님, 소병철 위원님 다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회의, 다음 상임위 전체회의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자 하는 데는 이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정부 쪽에서 좀 더 충실하게 지금 몇 가지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안건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반드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역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계속 회의를 하려면 앞으로 한 1시간 걸리는데 계속하기에는 무리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저녁 식사가 아니라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잠시 정회를 하고……

○김종민 위원 밥은 먹어야지요.

○최강욱 위원 이것은 별로 쟁점도 없고 그냥 끝내실 수 있잖아요?

○김영배 위원 빨리 하시지요.

○위원장 박광온 바로 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가겠습니다.

### 103.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외교통일위원장 제출)

(18시30분)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다음은 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3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03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대안)은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내용에 지방자치단체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와의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 남북관계 발전에 필요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준 통일부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3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준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됩니다.

순서를 약간 바꾸겠습니다.

### 1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754)

### 119.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47)

### 120.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

원장 제출)

### 121.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제출)

(18시32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1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준 위원 담당 차관이 안 왔는데……

○위원장 박광온 약간 지금 혼선이 있는데요, 곧 아마……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수정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8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용적을 완화 특례규정의 중첩적용 허용 범위를 안 제78조제7항 각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려는 입법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법문을 일부 정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9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48조제1항 및 제49조의2제1항에서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인 법률 제18314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을 개정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해당 법률의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9월 21일에 시행되어 현행법으로서의 효력이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개정 대상을 현행법 규정으로 조정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0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체계·자구 검토결과 안 제4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4조의2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안 부칙 제2조의 적용례 규정을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21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경미한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장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제1차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8항부터 제121항까지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성원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122.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80)

**123.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705)

**124.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707)

**125.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476)

**126.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045)

**127.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필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98)

**12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31.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295)

**13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보승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7)

**133.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3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8시35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2항부터 제134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8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위탁사업자에게 재제출명령을 내리고 필요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전제가 되는 자료 제출명령의 근거인 현행법 제51조에서는 위탁사업자의 범위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가 제50조와 관련된 경우 그 업무를 취급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 제51조의2제1항의 위탁사업자도 동일하게 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적합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9항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대안)은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제정안 제41조 및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등 분쟁조정업무에 상당한 공공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분쟁조정과정에서 비밀누설을 엄격히 제재하여 데이터사업자의 비밀을 보호하는 것이 제정안의 목적에도 보다 부합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다른 법률상 유사한 분쟁조정위원회의 경우와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참고하여 형벌규정으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제125항, 제126항, 제127항, 제131항, 제132항 및 제133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123항, 제124항, 제130항 및 제134항은 본칙의 내용에 맞추어 부칙의 경과조치를 정

비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안은 과기부차관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아닙니다, 방통위 소관입니다.

○전주혜 위원 여기에 보면 2조 1항 1호 위치정보에서 ‘수집된 것을 말한다’를 ‘측위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정했는데 측위된다는 것은 오히려 더 일반인들한테 생소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보다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위치정보의 정의를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측위된 것으로 개정하는 겁니다. 수집된 것보다는 훨씬 더 강화된……

○전주혜 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건가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아니, 법상으로 쓰는 표현이라고……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을……

요새는 어려운 것을 쉬운 것으로 바꾸고 있는데 이해가 되는 것을 오히려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는가, 저는 자구상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 보면 이것을 이렇게 이 항 1호처럼 이러한 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다 측위로 바꾸냐, 지금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게 14조 규정을 보면, 14조 1항 2호를 보면 이런 경우는 또 수집한 게 됩니까? 1항 2호를 보면 이걸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경우’, 어떤 것은 수집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경우는 측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관성의 면에서 이것은 수집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좀 더 강화되는, 그러니까 저희가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닙니까? 허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전주혜 위원 뭘 전환해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그러니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전주혜 위원 그게 아니라 지금 수집하고 측위를 애기하는 거지요. 수집이라는 말이……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아니, 이 법 자체가요.

○전주혜 위원 아니, 수집이라는 말이 2조 같은 경우는 수집을 측위로 굳이 바꾸셨는데 뒤에도 지금 수집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어떤 건 수집이고 어떤 건 측위고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사실에 대한 것은 보유근거, 보유기간……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전주혜 위원 예?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지금 16조에 있는……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수집이면 수집이고 측위면 측위인데 앞에는 측위로 되어 있고 뒤에는 수집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지금 그 지적을 하는 거지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시냐고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거기에 대해서는 논의되지를 않아서요.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건데……

○전주혜 위원 아니, 그래서 이것을 굳이 측위로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수집으로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측위로 해야 될 어떤 명분이나 꼭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지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게 자구 수정인데……

○전주혜 위원 이게 자구잖아요.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김현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거라서 제가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무튼 개인 의견으로는, 이것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이 기회를 통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것은 수집을 측위로 바꾼 거라 발의하신 의원님의 뜻이 있었겠습니다만 과방위

오늘 처리된 것도 보면 모 의원님은 지불을 지금으로 한다, 이렇게 딱 한 자 수정하는 걸 법안으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희한하게 항상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내시거든요.

이게 사실 법안을 낸다고 할 때는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제도를 만든달지 아니면 어떤 취지에 의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자꾸 수정에 한하는 법안 발의는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참에, 아무튼 저는 측위라는 말은 이해가 안 돼서 이걸 수집으로 바꿔도 되겠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 말씀 나누시고 그다음에 또……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잘 들었고요.

그런데 위원회에서 일부러 저 단어를 선택해서 쓴 것이라고 하니까 그건 존중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처음 말씀하신 어떤 자구하나를 바꾸는 이런 법안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송기현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위원장 박광온** 유상범 위원님.

○**송기현 위원** 먼저……

○**유상범 위원** 대체토론 때문예요.

하실 거예요? 의사진행이예요?

○**송기현 위원** 아니, 의사진행 아니고 대체토론.

○**유상범 위원**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이것 관련해서 좀……

이게 과기부 산하인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여기에 지금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정도로 권한이 부여됐습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유상범 위원** 이것 굉장히 큰 권한이거든요, 사실은 결정이.

그리고 이 법에 보니까 분쟁조정위원의 행위에 대해서 형법, 뇌물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의제 규정까지 뒀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신분상, 업무에 비밀보호의무를 사실 강하게 부여하시고 공무원집행의 청렴성이나 이런 것을 요

구하시는 사항인데 이분들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처럼 특정 위원들이 형벌조항에 공무원으로 의제될 정도로 신분상의, 그러니까 업무처리의 청렴성을 요하고 그럴 때는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사실은 형벌규정으로 처벌을 하는 게 다른 법에서 다 일반적인 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유일하게 이 법에서는 이것을 과태료로 규정을 해 가지고, 사실은 그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굉장히 크고 또 비밀준수의무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처벌을 상대적으로 과태료라고 그래서 행정벌이 가 버렸어요. 이걸 형사벌이 가야 되는 거거든요, 체계상.

그래서 이와 같이 규정된 것은 체계상 맞지를 않고 다른 법률, 각종 위원회에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위원회들은 대부분 위반했을 때는 형사벌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다른 법체계와의 정합성 차원에서 이걸 많이 문제가 있어 보이는 데 이것을 형벌규정으로 변경해도 문제는 없겠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저희 상임위에서도 사실 과태료하고 형벌하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데이터산업 진흥 측면에서 과태료라는 게 낫겠다 해서 결정이 됐는데 저희는 법사위에서 수정하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도 문제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이 규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민간인에게 사실상 공무소, 판사의 결정권한과 같은 큰 권한을 주는 상황에서 업무집행의 청렴성이나 객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된다고 판단된다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알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특히 1호와 2호를 비교하면 경중의 차이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걸 형벌규정으로 변경하는 걸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과기부에서도 동의를 한 것 같은데……

○**위원장 박광온**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박철호** 저희도 검토보고에서 형사처벌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고요. 유사입법례를 보면 현재 법정형이 1년, 3년, 5년 정도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형 정도만 정해 주시면 저희가 과기부와 협의해서 조문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나치게

중할 이유는 없지만 분쟁조정위원회 업무의 청렴성을 위해서도 한 1년 정도면 어떨까요, 1년 이하의 징역 정도?

○전문위원 박철호 예, 사례가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일단 민간인이고 하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보면 거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하실 위원님…… 송기현 위원님.

○송기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고, 관련된 사항인데 관련된 것은 유상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라서 더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요.

저도 야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하나 바꾸는 그런 법안 개정하는 것에 굉장히 반대합니다. 반대하고, 여러 차례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 대해서 그것을 여당 의원이 꼭 그렇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때 너무 그렇게 여당·야당 하지 않으면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서로 우리 법사위 논의할 때는 여당·야당 떠나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저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유상범 위원님하고 같이. 그런데 이것을 법사위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관님이나 전문위원이 동의한다 그레가지고 법사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건 적어도 과방위에서 형벌로 할 것인지 과태료로 할 것인지는 논의해서 결정한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단순히 형벌로 우리가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저는 유상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데 이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과방위의 의견을 거쳐서 과방위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형벌로 하는 게 맞겠다는 법사위 의견이 있다, 그래서 과방위 의견을 받아 가지고 와서 법사위가 결정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위원님, 이게……

○송기현 위원 차관님, 과방소위에서 논의할 때

과방위 위원님들이 그래서 형벌로 하거나 과태료로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었나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송기현 위원 그런 게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처음의 안에는 과태료로 되어 있다가요…… 이게 세 의원님 안이 병합이 된 안입니다. 그래서 허은아 의원님 안에는 형벌조항으로 되어 있었고, 논의과정 중에서 데이터산업 진흥을 고려해서 과태료 정도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합의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사실은 지금 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형벌조항으로 해도, 여러 가지 아까 여기 검토보고도 있지만 분쟁조정위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형벌로 해도 충분히 저희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기현 위원 저도 이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방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방위 소위에서 과태료로 하는 것이 데이터산업의 특성을 봤을 때 적절하다고 해서 이렇게 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방위의 의견을 듣고서 우리가 수정하는 것이 법사위 운영상 맞다는 생각이구요.

○유상범 위원 지난번에 국토위에서도…… 이게 내용 변경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국토위에서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합의를 하면 그것을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송기현 위원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다 말씀하셨나요?

○송기현 위원 예,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장인 제가 수석전문위원께 형벌로 하느냐, 과태료로 하느냐 하는 수정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봤더니, 수석전문위원이 설명을 하실 겁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장호 송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우선적으로 이것을 형사벌로 하느냐, 아니면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규정하느냐 그 판단을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 법사위도 어떠한 위반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인지 아니면 과태료를 부과할 대상인지,

특히 다른 입법례하고 비교해서 체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그것을 수정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까지 그런 수정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법사위원회 의결로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는 게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입니다.

소병철 위원님.

○소병철 위원 위원장님, 그렇지 않아도 체계·자구 한계에 대해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법사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담 가는 말씀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말씀은 법리적으로는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그래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를 들면 형벌의 형량 정도를 조정한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재의 종류가 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방금 유상범 위원님이나 송기현 위원님 말씀처럼 양 간사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난 뒤에 처리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다른 상임위에 대한 예우나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차관님,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이 데이터 기본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 데이터산업 진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이라서 저희가 작년에 발의가 되면서 계속 여러 차례 논의와 공청회나 관계부처 협의를 마무리하고 올라온 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수석전문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법사위에서 이 정도, 저희가 법사위 행정실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래서 여기서 고쳐 주시면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산업을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유상범 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야겠네요.

○위원장 박광온 잠깐만요.

과방위의 여야 간사님 의견을 청취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그 청취하는 절차는 차관께서 청취를 하셔서 다시 의견을 제시하는 건데 그냥 법사위에서 하시는 게 좋겠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예.

○이수진 위원 그러면 그대로 통과시켜 줘야지요.

○위원장 박광온 오케이.

자, 그러면 이것은 우선 잠깐 좀 의결을 미루고 다른 것부터 의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2항, 125항부터 127항, 131항부터 133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3항, 제124항, 제128항, 제130항, 제134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9항은 잠시 뒤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차관님, 잠시 밖에 대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경식 차관님, 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135.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669)

13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170)

13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590)

138.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562)

139.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11213)

14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무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268)

1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804)

143.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4.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2)

14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3)

14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송갑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1)

(18시55분)

○위원장 박광은 다음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35항부터 제146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8항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업무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지정된 품질인증 평가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기관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체계상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0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분야에도 상생결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8호의3 단서는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으로 지급받은 외상매출채권을 할인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행위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인데 이를 상생결제 정의규정의 단서로 규정하는 것은 체계상 적절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할인행위 금지의무에 관한 내용은 중앙관서 등의 상생결제에 대한 법적 근거인 개정안 제22조제6항의 후단으로 규정하되 할인행위 금지의무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입법례를 참조하여 자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제139항, 제141항, 제143항, 제144항 및 제145항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의사일정 제136항, 제137항, 제142항 및 제146항은 법 문언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체계 및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와 주서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은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님,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차관님, 김용래 특허청장님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5항, 제139항, 제141항, 제143항부터 145항까지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6항부터 138항까지, 제140항, 제142항, 제146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기영 차관님, 강성천 차관님, 김용래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 14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

(18시58분)

○위원장 박광은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47항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철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의사일정 제147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고위험병원체의 반입 및 생물테러감염병원체의 보유에 대한 허가취소 근거를 신설하고 고위험병원체 취급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보유하고 있는 고위험병원체를 폐기하여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이전에 고위험병원체 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인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제22조제5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제3호에 대해서는 적용례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위험병원체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은 후 허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안 제22조제5항제2호 및 제3호도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라 하더라도 추후에 반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박철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7항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은경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9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98.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위원장 박광온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의사일정 제97항과 제98항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윤한홍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윤한홍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고 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의

결하였습니다.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공무원을 동원한 모금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기부자의 개인별 연간 총기부액 상한을 500만 원으로 하며 공익신고자 제보 조항을 신설하고 법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소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시행일을 맞추기 위하여 동법 시행일을 2023년 1월 1일로 전체회의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소위원장님 그리고 제2소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104.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양향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3871)

## 105.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09.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0.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 11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1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562)
11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15.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춘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362)
116.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14)
11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출)

(19시03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04항부터 제117항까지 법률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허병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간략하게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의사일정 제106항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 회장을 각각 그 회원이 직접 선출하도록 하고 해당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금고 이사장의 직접 선출과 의무적인 선거 위탁에 관한 개정 규정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나 동 개정 규정의 실제 적용일이 2025년 3월 12일로 그 사이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할 수 있도록 부칙 제5조 및 제6조에 경과규정을 두는 내용의 수정의견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 개정안과 연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내왔으나 검토보고 발송 이후에 위 법률이 반드시 새마을금고법과 동시에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중앙회 회장 선거가 의무위탁 대상 선거로 확정될 경우 이를 반영하여 위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8항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을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공공도시정비사업의 수행을 촉진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개정안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행일인 2021년 7월 14일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시행

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변경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2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 판매, 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계좌에 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를 통해 예산 및 보조금 등을 관리하고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는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품권 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의 별도 계정에서 보관 관리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4항, 제105항, 제109항, 제110항, 제114항, 이상 5건의 법률안은 법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7항, 제111항, 제113항, 제115항, 제116항, 제117항, 이상 6건은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광온 허병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차관님, 김창룡 경찰청장님, 신열우 소방청장님께서 출석하셨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한 행안위 소관 제97항과 제98항 법률안과 새로 상정한 행안위 소관 법률안에 대해 일괄해서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혜 위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전주혜 위원 행안부차관께 여쭙보겠습니다.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에 관한 법률인데요, 지금 이게 수정안이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수정안이고요.

정의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법의 설립취지는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전주혜 위원 그런데 이 수정안의 2호를 보면 국가폭력이 아니라 외부에 의한 테러나 이런 것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취지가 국가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그리고 유가족에 대한 치유와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가의 적대세력으로부터 어떤 위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자와 유가족……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양립하지가 않는 것 같거든요.

한번 여쭙볼게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등’을 지금 ‘국가폭력 등’으로 수정안에서 그렇게 명시하고 있는데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과 그 이외의 세력들에 의해서……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요. 이외의 세력이 어디를…… 이것 판단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게 여러 국가, 대한민국 이외의 어떤 세력……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무슨 외교수립을 안 한 나라인 것이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전주혜 위원 여기에 그러면 북한이 포함됩니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나라에?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요?

이런 게 굉장히 해석이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여쭙보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게 의원입법으로 발의가 됐었는데요, 국가폭력에 대한 명료한 규정을 정립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행안위 내에서 논의를 죽 하셨는데 직접적인 국가폭력에 의한 것과 국가가 존립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한 국민들을 치유해야 된다고 하는 그 뜻이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개념 정립을 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1945년 8월 15일이니까 6·25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렇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면 그때 북한의 도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러한 전쟁 거기에 따라서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게 된 분도 지금 여기에 해당을 하냐고 제가 여쭙……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럴 수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것은 해당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전주혜 위원 그리고 이것은 또 체계·자구의 문제인데요. 다른 부분은 다 ‘중대한 인권침해사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2호 나목만 ‘테러·인권유린’ 이렇게 돼 있어요. 인권유린이라는 게 굉장히 불명확하거든요. 인권유린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판단을 도대체 어디서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센터에서 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것은 보편적인 판단 기준으로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다양한 형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연성을 놓고 예를 들면 과거사 문제에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분들 또 유가족 또 그분들에 관계된 분들을……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권유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누가 결정하냐고요. 이것은 이 트라우마센터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사위원회 같은 각각의 과거사 사건들로부터……

○전주혜 위원 과거사 사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진상규명이 되고 그 피해자라고 규명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전주혜 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은……

잠시만요. 1분만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법문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전주혜 위원 인권유린은 과거사랑 관계없는 거지요. 왜냐하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 그러니까 국가에 따른 폭력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내의 폭력이 아니라요. 지금 나목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경우의 인권유린이라고 돼 있으니까 그게 지금 불명확하다 얘기를 하는데, 과거사는 국내 폭력이지만 외국이 이러한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에 의한 인권유린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때 과거사 중에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전주혜 위원 지금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차관님.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아닙니다. 과거사 중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피해를 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창이라든가 제주4·3이라든가 여순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치유의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유가족이나 남아 계신 그 범위에 있었던 분들이 그 사건들로 인해서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 또 어떤 정신적인 많은 피해를 봤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이 트라우마치유센터에서 도움을 드리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주혜 위원 이것은 국내에서 발생한 것만 지금 취급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그렇다고 보시면……

○전주혜 위원 우리나라 국민이 예를 들어서 탈레반이나 이렇게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해 다칠 수도 있잖아요.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됩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경우에도.

○전주혜 위원 그래서 제가 인권유린이 뭔가를 여쭙보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인권유린은……

○전주혜 위원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한다 하더라도 외국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적대적인 세력에 의한 것은…… 이게 인권유린이 뭘 의미하는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서 오히려 인권유린을 우리가 정의규정에 넣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탈레반이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입니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지금 그렇게……

○유상범 위원 왜 이 질문을 하나면 탈레반 같은 세력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람이 납치돼서 죽기도 하고 고생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규정을 놓고 보면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 아닌 상황에서, 일종의 테러조직이잖아요. 그 조직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유린되거나 이렇게 폭력

을 당했을 때는 이 규정에 의하면 트라우마센터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규정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니까 우리가 보호해야 될, 당연히 보호대상이 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법규정의 미비로 보호대상에서 지금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규정의 국가폭력 등이라는 것에서 그 부분을 조금 더 포함시킬 수 있게 법규정을 조정을 해야지 가능한 거지, 그런 사람이 보호대상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이 법의 취지가 대한민국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국민들의 피해를 치유해 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적대시라는 말 그 뜻이 꼭 무슨 적과 적이라는 뜻보다도 대한민국체제가 있음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포괄적으로 상정을 하고 그 국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만든 트라우마센터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적대시가 뭐냐 이렇게 자꾸 규명을 하시면 그 범위가 좁아져서 위원님들께서 추구하시는 이 기능과 좀 상치되는 면이 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러니까 법문에 의했을 때는 이 피해자가 이런 특정한 정통성 부정 또는 적대시 세력에 의한 피해 이렇게 딱 지금 규정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정했던 국가폭력 등 해서 더 넓게 포함시키려고 했던 이 부분이 빠진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어떤 테러집단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 그것도 결국은 국가폭력트라우마센터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를,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차라리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 또는 국제테러집단’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규정을 좀 보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거지요. 그래야지 반드시 국내에서 피해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입은 피해도 같이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 수정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요.

차관님 동의하시면……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동의합니다.

○유상범 위원 우리 전문위원, 이것을 해서 국제테러조직이라고 인정되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명료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병조 일단 그러면 유 위원님 의사 표현을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예로 드신 게 국제테러집단……

○유상범 위원 예, 그런 식으로.

○전문위원 허병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앞부분에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이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국가가 존재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존재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정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렇게 토대를 마련하면 된다는 취지이신 거지요?

○유상범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유지하되 여기에다가 ‘국제테러조직’ 이런 식으로 문구를 추가한다면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수진 위원 어디다 넣겠다는 거지요?

○전문위원 허병조 그러니까 국가폭력 등에서 첫 번째 1호에 따른 국가폭력은 우리나라 국가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거고요, 두 번째 나목에 보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유상범 위원님 의견대로 하면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적대시하는 세력이 아닌 것, 지금 현재 국제테러조직이라든지 어쨌든 간에 차관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존재함으로써 입을 수 있는, 국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유까지 다 포함하는 것으로 넣자 그런 취지이신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 부분에다가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국제테러집단 등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 이렇게 삽입을 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명료해질 것 같습니다.

○유상범 위원 지금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광온 더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차관님, 이게 ‘국가폭력 등’ 이렇게 하면서 개념 정의가 조금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내에 보면 유사한 트라우마 치료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공기관?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있습니다.

○윤한홍 위원 그렇지요, 공공기관이 많이 있지요? 국가가 운영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

면 중복이 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의에 보면 ‘군 의문사 및 군대 내 중대한 인권침해 등과 관련된’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국군수도병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군인 트라우마 치료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윤한홍 위원 그러니까 저는 국가폭력 등이라는 개념 정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안 그러면…… 지금 각 부처에서 복지부라든지 경찰청에서 하는 트라우마치료센터도 있고 국방부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치료센터 그다음에 복지부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건처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핏 보면 또 정부부처하고 비슷한 현상이 생겨요. 행안부에서 이것을 설치할 하면 타 전문 부처에서 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와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왜 갑자기 이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각 부처별로 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 개념이 정확하지, 명확하지 않으면 타 부처에서 운영하는 트라우마센터하고 중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중삼중의 예산낭비가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서 국가폭력 등이라는, 만약에 행안부에서 하고 싶으면 이 용어 정의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용어 정의를.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부처, 트라우마센터 기능을 하고 있는 부처들과 협의를 했고요. 재난이나 성범죄나 특정 업무에 대한 분야별 전문 치유기관들은 그 특성대로 이 기능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국가폭력이나 국가의 존립으로 인해서 다양화된 글로벌 세상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저희 목적은 뚜렷하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기관 간 협의를 충분히 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아니, 그 협의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 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거든요. 있지요? 국군수도병원에 정신건강증진센터라는 군인 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국방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개념에 보면 군대 내 중요한 인권침해 등 관련 행위, 군 의문사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거기로 갑니까, 여기 새로 생긴 이쪽으로

가게 됩니까? 어디로 가게 되나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윤한홍 위원** 그래서 지금 행안부가 평소에 하던 대로 타 부처 업무를 또 관여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 지적을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것은 절대 아니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은 국가폭력과 국가존립에 관해서……

○**윤한홍 위원** 그러면 군대 내 이 부분은 군인 트라우마치료센터가 있으니까 여기서 따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중복되게?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그 부분도 국가권력에 의해서 군인들이 피해를 입은 것과 군대생활 내에서 발생하는 것과는 좀 다르기 때문에……

○**윤한홍 위원** 여기 주요내용에 있잖아요, 군대 내 중요한 인권침해. 여기 있는데 왜…… 그러니까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념 정의를 다시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법은. 한 번 정도 계류를 했다가 개념 정의를 다시 다듬어서 다음번에 하는 게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저희가 하는 것은 그 피해자뿐만 아니라 유가족, 배우자, 직계존속 이렇게 국민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재해나 성범죄나 군대 내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당사자만 치유하는 것은 부처별로 지금 기능별로 하고 있는 것이 맞고요. 저희는 그 배우자와 유가족 또 상관관계가 있는 분들까지를 치유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 보호를 위해서는……

○**윤한홍 위원** 취지는 그런데 이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법률안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개념을 좀 더 구체화하고 정확하게 다듬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 상임위에서 곳곳에 개념 정의를 했고요.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트라우마센터와는 기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정리를 해서 이 법안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걱정하시는 것처럼 혼란스럽거나 중첩되거나 이러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전주혜 위원님.

○**전주혜 위원** 치유대상자 관련해서 생존 피해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데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이게 좀 불명확해 보이거든요. 어떤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저희가 과거사 업무를 정리하다 보면 직접당사자뿐만 아니고 그분들의 자손과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의 트라우마가 오히려 더 심각하게 남아 있어서 안타까운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주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트라우마라는 게 형제자매 중 국가폭력 등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이렇게 해야지, 이게 도대체 트라우마도 이 조문이 용어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위원님, 그래서 직접 피해자와 그 주변인, 직접주변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특정을 했고요.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병의학적으로 정리가 되고 있고 어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게 규명이 되기 때문에 그게 판정이 되면……

○**전주혜 위원** 왜냐하면 다목 같은 경우는 ‘국가폭력 등을 조사·기록하거나 피해자를 지원·치료하는 중에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및 형제자매 중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이게 인과관계가 지금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지금 윤한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법이 원래의 원안에서 많이 손보신 것 같습니다. 원안은 이것보다 훨씬 더, 원안을 아무튼 많이…… 원안에서 많이 바뀌었거든요, 수정안을 보니까요.

그래서 행안위에서 여러 수고를 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명확성의 원칙이나 어떤 체계·자구 간에 완성분이라고 내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한번 보류해서 저희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박광온**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안건 제 10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해서 다음 전체회의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차관님 동의하시지요?

○행정안전부차관 고규창 예.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7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8항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부분에 추가해서 시행일을 고향사랑기부금법과 맞추어서 2023년 1월 1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새로 상정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7항, 제111항, 제113항, 제115항부터 제117항까지의 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일정 제104항은 전체회의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5항, 제106항 그리고 제108항부터 제110항까지, 제112항, 제114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규창 차관님, 김창룡 청장님, 신열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129. 데이터 산업 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안 (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제출)

(19시29분)

○위원장 박광온 다음은 직전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9항과 관련하여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께서 과방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통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조경식 이원욱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인 조승래 의원님, 박성중 의원님과 통화를 했고요. 의원님들은 법사위원들의 체계 문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만 저희 과방위 심의할 때 새로운 산업인 데이터산업을 진흥하고 또 형벌보다는 과태료 등 행정벌 위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심사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하였고요.

체계 문제 지적에 동의하셨고 형벌로 하게 된다 그러면 콘텐츠산업 진흥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로 해 주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여야 간사, 위원장님이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저번에 통과시켜 주신 인앱결제법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데이터산업 기본법을 해서 좀 더 산업 진흥을 할 수 있도록 매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그러면 안을 법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들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철호 그러면 추가로 수정하실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안은 제47조(과태료)만 되어 있던 것을 제47조(벌칙)를 신설해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목적으로 그 비밀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기존의 47조는 제48조(과태료)로 바꾸어서 1항 1호에 있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 대해서만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9항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을 추가해서 과태료와 벌칙조항을 지금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회의와 관련하여 조수진 위원님께서 서면 질의를 하셨습니다.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는 일주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와 해당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신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한홍 간사님.

○**윤한홍 위원** 오늘 회의 시작 무렵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어제 발의된 대장동 게이트 특검법안이 지금 법사위로 회부가 됐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래서 오늘 법사위를 아직 마치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간사님과 위원장님께 부탁드린 대로 오늘 대체토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법안 대체토론에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릴 것 같지도 않고요. 어차피 오늘 법사위가 끝나면 이 특검법이 또 언제 법사위에서 대체토론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이미 의안과에서 상정이 돼서 법사위로 회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대체토론까지 하기를 다시 한번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고유법은 20일, 특검법은 15일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국회법에 되어 있습니다. 어제 발의하셨고 오늘 회부됐기 때문에 숙려기간인 15일을 채우지 않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숙려기간을 채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건으로 상정하려면 여야 간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데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현재 야당의 대장동 관련된 주장은 저희들로서는 허위에 근거한 정치적 공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할 수 없고요.

또 하나, 특검법 자체가 빨리 논의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해야 될 필요가 있는 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숙려기간을 지켜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윤 간사님.

○**윤한홍 위원** 숙려기간을 우리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도 숙려기간에 관계없이 여야 간사님의 요청에 의해서 많이 상정이 되고 대체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굳이 야당에서 요청하는 안건에 대해서 숙려기간을 말씀하시면서 거절을 하시는데, 사실은 아

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김남국 위원도 그렇고 국민의힘 게이트다, 대장동 게이트는 국민의힘 게이트다…… 이재명 지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특검법 발의가 됐는데 심사를 뒤로 미루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위원장님과 박주민 간사님께 요청합니다.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광온** 박주민 간사님.

○**박주민 위원** 아까 수차례 야당 위원님들께서 법무부장관 등을 상대로 대장동 관련된 고발사건들의 수사의 신속한 진행을 촉구하신 바가 있고 공수처 처장이나 법무부장관 모두 신속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기존의 수사기관들이 수사를 하겠다, 그것도 신속하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고 그런 질의를 야당 위원님들께서 하신 마당에 그런 수사기관들의 수사를 무시하는 특검법을 바로 저희가 논의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숙려기간을 지켜서 심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온** 충분히 여야 간사 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제가 회의를 마치기 전에 한 말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국회법을 개정해서 법사위원회의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자, 법사위원회가 상원처럼 각 상임위원회 위에 존재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반성적 토대 위에서 국회법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 정착해 가는 과정이 오늘 출발이 저는 정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만 아까 처음에 김남국 위원님과 권성동 위원님 사이에 있었던 부분은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발언은 헌법적 권한이지요. 다만 그것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또 헌법 21조 규정이기도 합니다. ‘의원의 발언이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한다’, 이것은 국회법 100조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의원의 발언은 그것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게 국회법의 정

신이고 헌법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 모두가 서로 국회의원으로 서로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갖고 이 위원회를 운영해 가는 데 모두가 책임을 갖고 있다, 그리고 권한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또한 그런 자세로 법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조수진 위원님이 따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드리고 또 마지막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제가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 다음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진 위원 위원장님, 10초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박광온 말씀하세요.

○조수진 위원 금방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그 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양비론으로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권성동 위원에게 조금 전에 김남국 위원이 한 이야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법학을 배운 게 오래돼서 잊어버린 것 같다’, 그거야말로 인신공격성 발언 아닙니까?

그것을 김남국 위원과 권성동 위원을 싸잡아서 양비론으로, 같은 급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여당 소속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더 갖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박광온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속기록을 한번 보시면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두 분 속기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요. 보좌직원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또 속기사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은 안 계십니다만 사실 타위법심사가 예정보다 한 4시간가량 늦어지면서 그분들을 장시간 대기하게 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9분 산회)

|       |       |       |       |
|-------|-------|-------|-------|
| 김 중 민 | 박 광 온 | 박 성 준 | 박 주 민 |
| 소 병 철 | 송 기 현 | 유 상 범 | 윤 한 홍 |
| 이 수 진 | 장 제 원 | 전 주 혜 | 조 수 진 |
| 최 강 욱 | 최 기 상 |       |       |

#### ○출석 전문위원

|             |   |   |   |
|-------------|---|---|---|
| 수 석 전 문 위 원 | 박 | 장 | 호 |
| 전 문 위 원     | 진 | 선 | 희 |
| 전 문 위 원     | 허 | 병 | 조 |
| 전 문 위 원     | 박 | 철 | 호 |

#### ○국회측 참석자

|           |   |   |   |
|-----------|---|---|---|
| 국회사무처사무차장 | 조 | 용 | 복 |
|-----------|---|---|---|

####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               |   |   |   |
|---------------|---|---|---|
| 법 무 부 장 관     | 박 | 법 | 계 |
| 국 방 부 차 관     | 박 | 재 | 민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김 | 진 | 욱 |
| 국가정보원기획조정실장   | 박 | 선 | 원 |
| 기획재정부제1차관     | 이 | 억 | 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2차관 | 조 | 경 | 식 |
| 통 일 부 차 관     | 최 | 영 | 준 |
| 행 정 안 전 부 차 관 | 고 | 규 | 창 |
| 산업통상자원부제2차관   | 박 | 기 | 영 |
| 국토교통부제1차관     | 윤 | 성 | 원 |
| 중소벤처기업부차관     | 강 | 성 | 천 |
| 경 찰 청 장       | 김 | 창 | 룡 |
| 소 방 청 장       | 신 | 열 | 우 |
| 특 허 청 장       | 김 | 용 | 래 |
| 질 병 관 리 청 장   | 정 | 은 | 경 |
| 방송통신위원회부위원장   | 김 |   | 현 |

#### ○법원측 참석자

|             |   |   |   |
|-------------|---|---|---|
| 법 원 행 정 처 장 | 김 | 상 | 환 |
|-------------|---|---|---|

#### ○헌법재판소측 참석자

|         |   |   |   |
|---------|---|---|---|
| 사 무 처 장 | 박 | 종 | 문 |
|---------|---|---|---|

#### ○출석 위원(18인)

권 성 동 김 남 국 김 영 배 김 용 민